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이 제시되어 있다. 위 ‘거주한’ 이란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에서는 “동조 제2항 (a)에 기재한 기간 내의 어떠한 시점까지든 그 국가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고 되어 있어 재일한국인은 이것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재산, 권리 및 이익’은 영향을 받지 않고 되어 있지만 ‘청구권’은 1항, 3항의 완전 및 최종적 해결의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원호법상의 연금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말하는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지 ‘청구권’에 해당하는지가 원호법의 호적조항·국적조항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된다.

전술의 합의의사록에서는 ‘재산, 권리 및 이익’이란 “법률상의 근거에 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이 양해되어 있다.

원고들은 원호법상의 연금청구권은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호법에 국적조항 및 호적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조선인, 대만인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들의 연금청구권은 법률(국내 실정법) 상의 근거없는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일한국인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서명까지는 일본에 귀화하면 원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의 서명 후는 귀화를 하여도 원호법의 적용을 못 받게 되었다. 청구권협정의 서명일까지 일본으로 귀화한 자는 한국 정부의 외교보호권의 대상으로부터 빠지게 되므로 원호법을 적용하지만,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보상문제는 완전 및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므로 그 이후는 귀화를 하여도 원호법의 적용은 없다고 한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에 의하여 재일한국인 전상자, 전몰자 유족은 귀화를 하면 원호법의 적용을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지만, 이것은 법률상의 근거에 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실체적 권리(재산, 권리 및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생성은 소송계속중에 귀화를 하면 원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종전의 통지를 폐지했다. 이것에 의해서도 귀화를 하여 이미 연금재정을 받은 사람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이것은 오직 소송대책을 위해서 취한 조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술의 도쿄지방재판소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법적 해석을 회피하고 원고들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한다고 가정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본건 부칙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다.

오사카지방재판소 판결은 도쿄지방재판소 판결과 같이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을 회피하였으나 한 걸음 전진하여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도 재일한국인은 보상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인정을 하였다.

그러나 양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완전 및 최종적 해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도 재일한국인 전상자에게 어떤 보상을 하는가는 입법의 정책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호적조항·국적조항의 위헌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어떠한 전쟁희생자에게 어떠한 보상을 하는가는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하는 판결의 논리에 따른다고 하여도 입법재량을 행사하고 제정된 법률은 당연히 헌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말하여야 한다. 입법재량을 행사하여 제정된 원호법의 국적조항·호적조항은 당연히 헌법 14조에 정하는 법앞의 평등원칙의 심사를 받는다. 판결은 호적조항·국적조항의 합리성을 이국간 약정에 의한 해결 가능성에서 구했다. 한일청구권협정에서는 재일한국인의 ‘재산, 권리 및 이익’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형태로 외교 결착을 본것이기에 가령 원호법상의 연금청구권이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면 재일한국인의 원호법상의 연금청구권에 관해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도 아무런 해결도 못한 이상 이제는 이국간 약정에 의한 해결 가능성으로 국적조항·호적조항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도쿄지방재판소, 오사카지방재판소는 국적조항·호적조항의 합리성이 없어졌다고 하여도 입법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은 이상 국적조항·호적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것과 같고 위헌입법심사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7. 중재신청의 필요성

한국 외무부장관은 1994년 1월 26일 원고들의 질의에 대하여 재일한국인의 원호법상의 권리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2항 (a)에 규정하는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답을 하였다. 이 점에 관한 한일 양국의 견해는 완전히 엇갈려 있다.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는 동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해서 한일 양국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하고(동조 제1항), 이 것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해결한다(동조 제2항 내지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제3국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식민지 주민을 전쟁에 종사시키면서 전사상에 대한 보상은 식민지가 독립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부인하는 나라는 일본 밖에 없는 점(‘부상 또는 전사한 외국인에 대한 구미각국의 조치개요’, 1982년 6월 3일, 일본외무성 아시아국 중국과), 이불라힘·케이에 이외 대 프랑스사

건(통보No196/19)에 관해서 규약인권위원회가 1989년 4월 3일에 채택한 견해(통보자들은 프랑스인과 같은 조건으로 프랑스 육군에서의 군무에 복무해왔다. 세네갈 독립 후는 프랑스국적이 아니라 세네갈국적으로 되었지만 … 국적의 변경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연금지급의 근거는 군무를 제공한 것에 있는 것이고 세네갈인도 프랑스인도 제공한 군무는 같기 때문이다 … 규약인권위원회는 규약 제26조(법앞의 평등) 위반이라는 견해를 가진다), 한일청구권협정 및 동 의사록의 조문해석, 입법부작위에 언급한 전기 도쿄지방재판소 판결, 위헌의 의문이 있다고 한

오사카지방재판소 판결 등으로부터 보면 중재위원회의 결론은 한국 정부의 해석을 타당하다고 할 것으로 예측된다. 원고들은 1심판결 후 한국 정부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 대한 중재요청을 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아직도 일본 정부에 대한 중재요청을 안 하고 있다.

이번 제기한 헌법소원은 중재요청을 안 하는 한국 정부의 행위가 한국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을 문의하는 것이다.

식민지 지배 하 일본국의 침략전쟁에 동원된 한국인 군인군속의 보상은 일차적으로는 일본국이 져야하고 일본의 재판소는 원호법의 호적조항·국적조항의 법앞의 평등원칙 위반을 선언하고 재일한국인 상이군속에 대한 원호법을 하루 빨리 적용하여야 한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5억불(유상 2억불, 무상 3억불)을 얻는 대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면했다고 하는 구실을 일본 정부에 준책임을 통감하여 더 이상 재일한국인의 전후보상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 해결했다는 구실을 일본 정부에 주지 않도록 하루 빨리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의한 중재를 일본 정부에 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韓日請求權協定과 過去史 補償要求

정인섭(서울대 교수)

1. 序

90년대 들어 한국에서는 韓日過去史 정리 문제가 여론의 커다란 주목을 받으며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의 요구가 밀물처럼 분출된 바 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아래 표면적인兩國間 교류는 매우 활발한 상태이나, 수면 하의 양국민의 감정, 특히 한국민의 대일 감정은 줄곧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인화물질과 같은 상태였다. 쓰라렸던 과거사의 상흔을 잊지 못하는 한국민으로서는 식민 치하의 고초를 상기시키는 사건이 여론의 전면에 들출할 때마다 합리적 통제가 어려울 정도의 反日感情을 분출시키곤 하였다. 특히 과거 일제의 戰爭遂行 必要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었다가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일본이 일체의 援護補償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은 한국민의 反日感情을 크게 자극하였다. 과연 이들은 누구를 위한 전쟁에 동원되었고 누구를 위하여 회생되었기에 일본이 이들의 대한 책임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현재 일본국 또는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과거사 보상요구의 상당수는 단순한 요구의 차원을 넘어 일본 법원에서의 소송으로 발전된 상태이다.¹⁾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예외없이 제기되는 爭點 中의 하나가 1965년 韓日請求權協定의 적용범위 문제이다. 1965년 한

국과 일본은 이 協定을 통하여 당시까지 존재하던兩國及兩國 국민간의 재산, 권리, 이익 및 請求權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協定에 관하여는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많았고 체결 이후에는 미진한 성과에 대하여 국내적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하였으나, 일단 한일 양국 간 유효한 조약으로 성립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해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측이 日本에 대하여 적어도 법적 권리로 재차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지워진다. 그간 과거사 보상요구가 제기될 때마다 日本政府가 내세웠던 거부의 근거도 1965년 협정을 통하여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점이었다. 따라서 請求權協定의 내용에 대한 민족과는 별도로 이를 통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합의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는 피할 수 없다. 이에 본고는 특히 오늘의 도입의 주 관심사인 在日韓國人 舊日本軍人軍屬 피해자의 援護補償 요구가 請求權協定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2. 請求權協定에 관한 韓日兩國의 기본입장

일본이 자신에 의하여 전쟁에 동원되었고, 자신을

위하여 회생된 이들에 대하여 원호책임을 거부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우선 일본은 원호관계법상 그 적용 대상이 內國人(日本人)에 한정되어 있는데, 在日韓國人은 1952년 4월 對日平和條約의 발효를 계기로 일본국적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遺族援護法 附則 제2항은 “戶籍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당분간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韓國出身 憲性者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²⁾ 恩給法도 제9조 3항에서 일본국적 상실을 수급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 원폭 피해자 관련법과 원래부터 외국인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였던 대만 출신 舊日本軍憲性者 遺族 等에 대한弔慰金支給法을 제외한 일본의 각종 원호관계법은 예외없이 국적조항을 설치하여 외국인에 대한 적용을 거부하였다.

다만 日本政府도 1965년 請求權協定의 체결 이전까지는 在日韓國人에 대한 援護補償 문제가 완전히 종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 즉, 원래 원호관계법의 적용 대상자였던 在日韓國인이 일본국적으로 귀화를 하면 원호관계법을 적용시켜 주었다. 즉 유족원호법에 대하여 日本政府는 이 법에 “일본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권리가 소멸된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 조항은 個人의 의지와 관계 없이 국가 상호간의 조약 등 일방적 권력에 의하여 국적을 변경당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의지에 기하여 귀화 등의 방법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대만 출신자에게 유족원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일본국적을 상실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된 것이며, “일본 귀화에 의하여 일본 戶籍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원호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었다.³⁾ 恩給法 역시 귀화교포에게는 적용이 인정되었다. 즉 은급수령자가 일본국적을 상실하면 은급을 받을 권리도 소멸하고, 설사 그가 다시 일본국적을 취득하여도 일단 소멸된 은급수급권은 회복되지 않으나, “평화조약의 발효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본국적을 상실한 한국인 등의 경우에는 日韓特別合意의 효력 발생일, 즉 1965년 12월 18일 이전에 귀화하여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면 평화조약 벌효시로 소급하여 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취급이 행하여진다”고 보고 있었다.⁴⁾

그러나 65년 請求權協定 이후에는 日本政府가 在日韓國인의 援護補償 문제는 법률적으로 종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즉 請求權協定의 請求權 포기 조항에 따라 “한국 출신자 등에 관하여는… 1965년 6월 22일에 서명된 이른바 한일협정의 취지로부터 同日字 이후 韓國籍인 자가 일본에 귀화하여 戶籍法의 적용을 받게 되어도 법(遺族援護法: 筆者註)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⁵⁾고 해석하여왔다. 왜냐하면 請求權協定 이전에는 在日韓國인의 對日請求權이 일종의 잠재된 권리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 권리가 동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후 彙化者에게는 새로이 請求權이 인정될 여지

2) 1952년 5월 15일 援護 제303호 厚生次官 通達 「遺族援護法 施行에 관하여」

… 제5(其他) 1. 戶籍法의 적용을 받지 않는 朝鮮人 및 臺灣人에 대하여는 당분간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일제 당시 戶籍法이란 혈통상 일본인에게만 적용되었고, 韓人에게는 朝鮮戶籍令이 실시되어 신분행위로 인한 변동사유(婚姻, 入養 等)가 없는 한兩者間의 자유로운 이동이 금지되어 있었다.

3) 1962년 10월 29일 援護 318號 通知. 이러한 입장은 1993년 변복되었다.

4) 総理府恩給局編, 恩給相談ハンドブック (1979), p.267.

5) 1966년 11월 10일 援護 제484호 厚生省 援護課長 通知.

가 없다는 논리였다.

확실히 日本 政府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일 양국은 65년 請求權協定 제2조 제1항에서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請求權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합의하였다. 다만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제2조 제2항 (a)호에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협정 서명일 사이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은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의 존재이다.⁶⁾ 在日韓國인이 이 예외조항의 해당자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日本 政府는 협정 제2조 제2항 (a)호에 규정된 예외 대상자의 '재산, 권리 및 이익'이란 실정법상의 근거가 있는 권리만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며,⁷⁾ 여기서의 실정법이란 성격상 일본 국내법이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日本 政府는 이 조항의 취지를 협정 체결 당시 일본 국내법상 인정되던 在日韓國인의 권리가 있으면 그런 사항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在日韓國人 援護補償請求訴訟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遺族援護法의 경우 이 법이 그 적용 대상을 일본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在日韓國인의 援護補償請求權은 협정에서 말하는 "法律上 根據에 기한 實體的

權利"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문제는 65년 請求權協定에 의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부분이라는 입장이다.⁸⁾ 특히 일본은 협정 제2조 1항 및 3항은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請求權에 관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확인한 반면, 제2조 제2항 (a)호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때에는 1947년 8월 15일 이후 상대국에 거주한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請求權' 문제는 제2조 제2항 (a)호의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하여 韓國 政府는 견해를 달리하였다. 우선 韓日會談 타결 직후 韓國 政府가 작성한 協定解說書부터 "終戰 以前의 모든 兩國 및 兩國民의 財產 및 請求權은 本協定에 의하여 없어지는 것"이나 "在日韓國인의 財產 및 請求權은 영향을 받지 않음"이라고 설명하였다.⁹⁾ 以後 對日民間請求權補償을 위한 韓國의 國內法 제정시에도 1947년 8월 15일 이후 일본국 거주자의 對日請求權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¹⁰⁾ 在日韓國인에 대한 援護補償問題는 日本 國內法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¹¹⁾

이같은 韓國 政府의 견해는 1971년 10월 11일 도쿄에서 개최된 <在日韓國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 간 제4차 실무자 회의>에서 日本 政府에

6) 이때 '거주한' 이란 상대방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국간에 양해되었다. 합의의사록 2의 (c).

7) 鄭商根 訴訟에서 大阪地裁에 被告 日本國側이 제출한 1991년 10월 8일자 준비서면 및 石成基·陳石一 訴訟에서 피고 日本國이 東京地裁에 1993년 2월 25일자로 제출한 준비서면 등.

8) 1992년 2월 26일 日本 國會 衆議院 外務委員會에서 柳井俊二 條約局長 답변, 同會議錄 제2호 p.11 및 1992년 3월 5일 日本 國會 衆議院 議算委員會에서 柳井俊二 條約局長 답변, 同會議錄 제12호 p.16 등.

9) 大韓民國 政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조약 및 협정 해설(1965), p.85.

10) 對日民間請求權 申告에 관한 法律 제2조 參照.

11) 1971년 7월 6일자 한국 외무장관 발 주일대사 앞 공문, 「태평양전쟁 전공상자 보상금 지급」. 또한 1973년 나고야 거주 在日韓國인 부부가 제2차대전 당시 사망한 장남의 유족 연금을 청구하자 日本 厚生省 援護局은 그것은 韓日協定으로 일단락된 문제라며 韓國 政府側에 알아보라고 한 사실이 있었다. 반면 同請求權에 대하여 당시 駐名古屋 한국영사관 측은 협정으로 해결된 것은 한국 내 사람뿐이며, 在日韓國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日本) 「中日新聞」(夕刊) 1973년 12월 6일자.

직접 통보된 바 있었다. 당시 회의에서 구 일본국 군인이던 在日韓國人은 請求權協定 제2조 제2항 (a)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한일 국교 정상화의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유족원호법의 적용을 정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의를 韓國 政府가 제기하였다.¹²⁾ 이에 대하여 日本 政府는 관계조항을 검토하여 추후 답변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후 日本 政府 實務에서는 在日韓國人에 대한 원호행정이 계속 거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韓國 政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항의조치 등도 취한 바 없었다.¹³⁾ 石成基·陳石一 소송을 계기로 관련 당사자들이 자신의 대일 援護補償請求權이 65년 請求權協定에 의하여 해결된 부분에 속하는가를 韓國 政府에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한국 외무부는 실제로 오랜만에 그러나 두 차례나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¹⁴⁾

즉, 在日韓國人 援護補償請求權과 관련된 請求權協定 제2조 제2항 (a)호에 대하여 한일 양국 정부는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다.

3. 일본 정부 해석의 문제점

12) 이는 1966년 11월 30일 援護 제484호 各都道府縣 民生主管部(局)長等前厚生省 援護局 援護課長 通達, 戰傷病者戰沒者遺族等援護法의 運用에 관하여(14) 問10等과 같은 日本 政府의 措置에 대한 抗議였다. 이 사실은 필자가 외무부에 민원 형식으로 접의한 내용에 대한 1994년 1월 26일자 외무장관 담신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다.

13) 따라서 金東勳 교수는 在日韓國인의 對日請求權도 65년 協定을 통하여 해결되었다고 보는 日本 政府의 태도에 대하여 韓國 政府가 아무런 항의도 하고 있지 않는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金東勳, 戰後補償をめぐる法的諸問題, (美在彌編, 在日韓國·朝鮮人の戰後補償, 明石書店, 1991), p.167.

14) 1994년 1월 26일자 한국 외무장관발 주일대사전, 민원회신(在日韓國人 전상자 보상문제). 『統一報』 1994년 2월 5일자. 1996년 1월 17일자 石成基 등에 대한 주일본대사 청원회신(일 원호법상 在日韓國人 차별문제).

15) 1965년 6월 17일자 회의에서, 그보다 조금 앞선 6월 12일자 회의에서 韓國側은 "他方 締約國에 居住하고 있는 者의 財產과 請求權..."이라는 문구를 제시한 바 있었다.

16) 1965년 6월 17일(또는 16일자) 회의에서, 아울러 日本側은 "居住" 라 함은 外國人登録을 행하고 1년 이상 居住한 者를 말한다고 제안하였다.

請求權協定 제2조에 대하여는 한일 양국 중 어느 편이 올바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協定文案의 성립 경위와 협정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볼 때 韓國 政府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協定文案의 성립과정을 검토한다. 請求權協定의 막바지 條文化 과정에서 이 協定을 통한 해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구성하는 제2조 제2항 (a)호의 文言으로 韓國側이 제시하였던 草案은 "一方締約國의 國民으로서 1945년 8월 15일부터 本協定의 署名의 날까지의 사이에 他方 締約國에 거주한 일 이 있는 자의 財產, 權利 및 利益과 兩國 및 兩國國民의 請求權"이었다.¹⁵⁾ 반면 日本側은 "一方 締約國의 國民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本協定署名日까지의 사이에 他方 締約國에 居住한 사실이 있는 자의 財產, 權利 및 利益"을 草案으로 제의하였다.¹⁶⁾ 즉 양국간에는 대상자의 거주시점을 1945년으로 하느냐 1947년으로 하는 점과 아울러 예외 대상의 표현을 財產, 權利 및 利益으로만 규정하느냐, 請求權이라는 용어를 추가시키느냐에 관하여 異見이 개진된 셈이었는데, 결과적으로 兩者 모두 日本側 主張이 수락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당초 협상에 임하는 韓國側의 基本方針은 在日韓國인의 財產과 請求權은 協定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고, 그러한 취지 하에서 제시하였던 文案이 위에 언급된 草案이었다. 이 때 韓國側은 請求權 이란 用語를 法의 根據 下에 日本에 대하여 要求 할 수 있는 權利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 具體的 內容이 徵兵徵用 被害者 補償을 포함한 8개 대일 청구 요강이었다.

반면 日本側은 請求權 이란 個人的 債權等이 아닌 外交法의 政府請求權으로 이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범위의 個個人의 權利가 請求權協定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존속하느냐를 규정하려는 제2조 제2항 (a)호에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를 指稱하는 데 불과한 請求權 이란 용어의 삽입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¹⁷⁾

이같은 日本側 見解가 전제된다면 韓國側으로서도 請求權 이란 用語의 삽입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實體的 權利만 인정된다면 그 權利의 실현을 위한 形式的 資格으로서의 請求權이란 權利의 한 속성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한국측은 일본측 제안을 수락하는 대신 實體的 權利로서의 個個人의 請求權이 “財產, 權利, 利益”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문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작성된 것이 “財產, 權利 및 利益”이라 함은 법률상의 根據에 의거하여 財產의 價值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實體的 權利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는 合意議事錄 2의 (a)였다.¹⁸⁾ 그런 의미에서 請求權協定 속의 請求權 이란 용어의 의미는 韓

日會談의 계기가 되었던 샌프란시스코 平和條約 제4조 (a)항상의 請求權이란 概念이 債權 等의 實體的 權利를 包含하였던 것과는 다른 意味로 使用된 것이다.¹⁹⁾

따라서 조문화 과정에서 양국간에 교환된 견해를 전제로 한다면 제2조 제2항 (a)호에 請求權이란 단어가 빠져 있다는 것이 在日韓國人의 實體的 權利 存續範圍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해를 배경으로 한일회담 타결 직후 韓國 政府가 작성한 협정해설서는 請求權協定에도 불구하고 “在日韓國人의 재산 및 請求權은 영향을 받지 않음”이라고 설명한 것이었다.²⁰⁾

한편 협정 성립 이후 일본이 援護補償에 관한 在日韓國人의 권리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논거는 합의의사록 2의 (a)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일본 실정법상의 근거로 해석하는 데 있다. 즉 일본 국내 실정법상 근거규정이 없던 在日韓國人의 援護補償請求權은 이른바 협정 제2조 제2항 (a)호의 ‘재산, 권리,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수긍하기 곤란하다.

첫째, 이같은 日本 政府의 主張은 請求權協定 제2조 제2항 (a)호의 설치 취지 자체에 모순되는 解釋이다. 본래 이 條項은 他方 締約國 管轄下에 있는一方 締約國 國民의 財產, 權利 및 利益에 대하여 該當 管轄國이 國內法만으로 일방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

록 삽입된 一종의 安全裝置였다. 왜냐하면 請求權協定 제2조 3항은 “一方 締約國 및 그 國民의 財產, 權利 및 利益으로서 本協定의 서명일에 他方 締約國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措置와 …에 관하여는 어떠한 主張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때 措置란 “兩國 및 그 國民의 財產, 權利 및 利益과 그 國民間의 請求權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여질 各國의 國內措置”를 지칭하였다.²¹⁾ 즉 제2조 3항상의 조치는 이미 취하여진 과거의 조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협정 타결 이후 상대국이 취할 장래의 조치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만약 제2조 제2항 (a)호의 예외규정이 없다면 일본은 請求權協定 이후 在日韓國人们이 戰前부터 일본에서 보유하던 모든 재산, 권리, 이익에 대하여 國內法만을 통하여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양국 어느 편도 원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2조 제2항 (a)호라는 安全條項이 삽입된 것이었다. 따라서 제2조 제2항의 존재 의의는 일방 당사국이 國내법만으로 상대방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계를 설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국 國내법만을 기준으로 이 조항에 따른 權利 存續의範圍을 결정하겠다는 日本側의 주장은 이 條項의 存在意義 자체와 모순되는 解釋이라는 批判을 면할 수 없다.

둘째, 日本側의 主張은 協定 文言과 합치되는 解釋이라고 보기 어렵다. 請求權協定 제2조 제2항 (a)호는 이 協定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對象者の 權利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국가간 合意의 형식으로 보장한 條項이다. 따라서 특별히 國內法으로 한정된

다는 표현이 明記되어 있지 않는 한 여기서의 “法律”이一方 當事國의 國內法만을 지칭하는 것으로는 해석될 수 없다.²²⁾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法律”을 國內法으로만 限定시키려는 態度는 오히려 이 條項의 설치취지와도 矛盾된다. 國際條約에서 “法律上 根據”라 할 때의 “法律”은 國際法을 包含한 概念으로 解釋되어야 하며, 특히 請求權協定의 성격상 植民地支配關係 清算과 관련된 國際法의 原則이 당연히 이 “法律”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협상과정에서 한국측이 요구한 請求權의 법적 근거 역시 일본 실정법에 한정되지 않았음을 물론이었으며, 日本 政府 역시 그같은 논리에 입각한 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도 있었다. 예를 들어 광복 후 한국에서는 일본은행권의 통용을 금지하고 이를 조선은행에 집중 보관하다가 상당액을 소각시킨 바 있었다. 협상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은행권 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일본측은 戰前부터 유통과정에 있던 일본은행권으로 일본은행원의 입회 하에 소각분 및 현물 제시분에 대하여는 辨濟에 응하겠다고 답한 바 있었다.²³⁾ 일본의 이같은 辨濟義務受諾은 자국 실정법상 근거에 의한 책임 인정은 물론 아니었다.²⁴⁾ 이는 식민지 독립과정에서의 법적 관계 청산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따른 책임 인정이었다. 따라서 재산, 권리, 이익이 “법률상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實體적 권리”를 지칭한다고 하였을 때의 법률을 日本 國內 實定法만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은 請求權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日本 政府의 태도와 모순되는 것이다.

한편 請求權協定 제2조 3항은 재산, 권리, 이익과 請求權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17) 福田博, 請求權條項, 法律時報 1965年 9月號, pp.80-81 同旨.

18)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 合意議事錄 2의 (g)와 (h)에서는 “請求權”과 “請求”를 구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즉 (g)의 “…韓國側으로부터 제출된 韓國의 對日請求要綱(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請求가 포함되어 있고”에서는 “請求”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韓國側은 對日請求要綱의 내용이 實體的 權利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資格에 불과한 “請求權”이란 용어로 지칭하지 않은 것이었다.

19) 福田博(전개주 17), p.80에서도 兩條約에서 請求權이란 概念이 서로 다르게 사용되었음을 指摘하고 있다. 이에 請求權이란 용어는 韓日會談의 하나의 상징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것으로 변모되어버렸다고 평가되었다. 新美隆, 「戰後補償問題と 日韓請求權協定」, 『青丘』 1993년 Summer(제16호), p.72.

20) 전개주 9 참조.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제2조 제2항 (a)호는 請求權을 제외한 재산, 권리, 이익만을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확인하여 在日韓國人의 對日請求權은 이미 해결된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면 日本政府는 색다른 논리적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그간 日本政府는 請求權協定이란 이에 규정된 권리에 대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이른바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상호 포기를 합의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개인의 請求權이 직접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즉 일본 국내적으로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권리는 請求權協定을 계기로 제정된 國內特別法²⁵⁾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런데 이 特別法은 일본측에 대한 한국측의 '재산, 권리, 이익'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請求權이 별도의 소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구일본 군인군속 피해자의 援護補償에 대한 권리가 이미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日本政府는 그 권리가 '재산, 권리,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援護補償에 대한 권리가 '재산, 권리, 이익'에 해당한다면 在日韓國人의 '재산, 권리, 이익'은 협정 제2조 제2항 (a)호에 예외로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請求權協定을 통한 해결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²⁶⁾

이상 請求權協定 문안의 교섭과정에서 표시된 양국 의도를 분석하여보거나, 협정 문언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볼 때 請求權協定은 在日韓國人의 援護補償請求權을 해결한 條約이라고는 이해될 수 없다.

4. 結

25) 정식 명칭은 財產 및 請求權에 관한 問題의 解決과 經濟協力에 관한 日本國協과 大韓民國間의 協定 제2조의 實施에 따른 大韓民國等의 財產權에 대한 措置에 관한 法律임.

26) 新美隆(전계주 18), p.73 참조.

일본이 제2차대전 희생자에 대한 援護補償을 거부하여온 배경에는 1952년 對日平和條約을 계기로 일본국적을 이탈한 外國人에 대하여는 日本政府가 책임질 수 없다는 논리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日本政府의 태도는 日帝 軍國主義에 대한 문책과 제2차대전의 종결처리라는 샌프란시스코條約의 의의를 왜곡시키는 해석이 아닐 수 없다. 日本이 國籍變更의 근거조항으로 삼고 있는 샌프란시스코條約 제2조 領土條項의 근본취지는 日帝의 責任을 추궁하기 위하여 과거 침략적 행위의 결과를 원상회복시키려는 것이다. 연합국은 侵略行為의 결과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舊併合地를 獨立 또는 返還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한 획일적 國籍變更이 오히려 침략 행위의 원상회복을 방해하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條項의 원취지를 물각시키는 결과가 된다. 軍人軍屬으로 動員되었다가 死亡, 負傷한 경우 身體의 原狀回復은 불가능하므로, 그 대신 國家補償의 次元에서 운영되는 것이 援護補償制度이다. 샌프란시스코條約 제2조를 援護補償에 대한 在日韓國人의 권리 박탈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動員 責任者인 日本의 책임을 확인하는 조항을 역으로 책임회피의 근거로 악용한 결과가 될 뿐이다.

특히 在日韓國人의 援護補償 請求權은 제2차대전이라는 과거의 사건에 日本人 資格으로 동원되었다가 입은 피해에 따른 權利이므로 動員者와 被動員者間의 權利義務關係는 1945年 이전에 이미 성립된 것 이었다. 반면 在日韓國人의 日本國籍喪失은 식민지 독립과정에서 발생한 非自發的 一律的 國籍變更이었으며, 領土主權變更에 따른 國籍變更時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國籍選擇權마저도 부여되지 않았던 경우였다. 따라서 日本 遺族援護法의 日本國籍喪失에

따른 權利消滅規定은 日本援護當局이 1962년에 밝힌 바와 같이 "個人의 意志에 관계없이 國가 상호간의 條約 등一方의 權力에 의하여 國籍이 變更된 경우에는 적용될 것이 아니고, 個人的意志에 기한 歸化等의 방법에 의하여 國籍을 상실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입장이 타당한 것이다.²⁷⁾ 최소한 동일한 논리에 일관하기만 하여도 國籍喪失條項을 근거로 在日韓國人에 대하여 적용이 거부되던 恩給法等 여타의 援護立法은 在日韓國人에게도 적용시켜야 하였다.

在日韓國人의 援護補償請求訴訟이 잇따르자 이와 같은 논리적 모순점을 더 이상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인식한 日本援護當局은 30년 이상 유지하던 1962년 援護 제318호 通知의 해석 입장을 1993년 번복하였다. 즉 1952년 샌프란시스코條約 發效에 따른 在日韓國人의 一律的 國籍變更도 遺族援護法 제31조에 규정된 受給資格 缺格要件으로서의 國籍喪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⁸⁾ 스스로의 논

리적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고 생각되나 정당한 해석태도는 아니라고 평가된다.

제2차대전에서의 韓人 사망·부상자는 누가 무어라 하여도 日帝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日帝의 전장에서 희생된 이들이다. 이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자는 日本 이외에 그 누구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請求權協定 이후 日本은 과거사에 대한 补償問題가 제기될 때마다 법적으로는 이미 종결된 문제이며 在日韓國人의 援護補償請求權도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여왔다. 그러나 65년 請求權協定 제2조의 해석상 援護補償에 대한 在日韓國人의 권리는 請求權協定을 통한 해결 대상에 포함된 항목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은 협정의 또 다른 당사자인 韓國政府의 견해이기도 하다. 한일 양국 정부는 請求權協定 제3조상의 분쟁 해결절차의 이용을 포함하여 이 같은 해석상의 異見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조속히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후보상법소원의 의미

장 완 익

1. 머리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청구권 협정이라 한다)이 1964년 체결된 이후 피해자들은 정부에 청구권자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법률의 제정이 늦어져서 즉시 지급되지 않았고, 법률이 제정된 뒤에도 그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기게 되어 그러한 피해자들은 사법적인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현재까지 대일 민간청구권과 관련되어 진행된 재판들을 살펴보고, 재일한국인 경우 헌법소원을 통한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2. 보상 관련 법률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하여 대일 민간청구권에 대한 보상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은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66. 2. 19. 법률 제1741호, 1982. 12. 31. 법률 제3613호로 폐지, 이하 청구권자금법이라 한다),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1971. 1. 19. 법률 제2287호, 1982. 12. 31. 법률 제3614호로 폐지, 이하 청구권신고법

이라 한다),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1974. 12. 21. 법률 제2685호, 1982. 12. 31. 법률 제3615호로 폐지, 이하 청구권보상법이라 한다) 등 3개의 법률이 있다.

가. 청구권자금법

위 법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수입(受入)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또는 도입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인데(제1조), 동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기준·종류·한도 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권신고법

위 법은 청구권자금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대일 민간청구권의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인데(제1조),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신고 대상의 범위를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

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권자금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만을 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지만, 그후에 제정된 청구권신고법 제2조는 그 범위를 넘어 일정한 경우(같은 조 제1항 제1·5·7호의 경우)에는 1945. 8. 15. 이후에 취득된 청구권까지도 신고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청구권보상법은 청구권신고법이 정한 신고 대상 청구권 중 신고관리위원회에서 신고를 수리한 것만을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어서 결국 대일 민간청구권 중 어떤 것이 보상을 받고, 어떤 것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지의 여부는 오로지 청구권신고법의 규정, 특히 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달려 있다.

우선 청구권신고법 제2조 제1항은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的 청구권을 신고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2항 (a)호를 염두에 둔 규정이다. 이 (a)호는 한일청구권협정의 타결에서 제외된 사항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청구권에 관하여는 한국 정부가 보상을 할 필요가 없음이 당연하고, 따라서 신고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는 위 (a)호를 근거로 재일한국인의 보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청구권신고법 제2조 제1항은 청구권자금법 제5조의 규정에 맞추어 원칙적으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다. 같은

항의 제2·3·4·6·8·9호에 게기된 청구권은 모두 위 일자 이전의 것만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같은 항 제1·5·7호에 게기된 청구권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취득시기가 1945. 8. 15. 전 이전 후이건 불문하고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제1·5·7호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2항 (b)호에 대응하는 규정이다. 즉 (b)호는 1945. 8. 15. 이 후에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된 청구권을 일괄타결의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이다.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제2조 (d)호에 의하면 “종전 후에 발생한 특수한 상태 하에서의 접촉”은 위 (b)호 소정의 “통상의 접촉”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인데, 위 제1·5·7의 각호는 바로 이와 같은 1945. 8. 15. 이후에 “비통상의 접촉”的 과정에 있어 취득된 청구권에 대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인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권신고법 제2조 제1항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일괄타결된 대일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하여 협정의 분류(즉 1945. 8. 15. 이전에 취득한 것과 그후에 취득한 것)에 대응하여 각 사례별로 입법적 규율을 하였던 것이다.

다. 청구권보상법

위 법은 청구권자금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국민이 가지고 있는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인데(제1조),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청구권신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관리위원회에서 증거 및 자료의 적부를 심사하여 당해 청구권신고의 수리가 결정된 것”을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권보상금은 1975. 7. 1.부터 1977. 6. 30.까지 2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동법 제10조 제3호, 부칙 제2항).

3. 관련 재판

가. 청구권신고법과 청구권보상법이 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청구

청구권자금법 제5조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상당 기간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기준·종류·한도 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보상청구권을 지급하라는 재판을 청구하자 대법원은 “법률이 제정되지 아니한 현재에 있어서는 대일 민간청구권에 관한 보상청구권은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가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직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의 방법이 없다”(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다1376,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1403)고 하면서 “대일 민간청구권에 관한 보상청구권은 헌법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한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상청구권이 아니다”고 하여 법률이 제정되어야만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당시에는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나 국가를 상대로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아무튼 재판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는 청구권신고법을 1971. 1. 19., 청구권보상법을 1974. 12. 21. 제정하게 되었다.

나. 위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의 청구

(1) 유형

위 법률들이 제정되어 피해자들 중 일부는 약간의 보상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위 법률들의 미비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많았다.

(가) 청구권신고법 제2조 제1항 제 1·5·7호에 미해당

조영학 씨는 1942년경 만주국 열하성 승덕에 있는 일본국 소유 주식회사 만주광산 승덕출장소 직원으로 입사하여 3년간 종사하다가 해방 직전에 출장소장의 피난명령을 받고 위 출장소를 출발하여, 1945. 8. 21. 만주 안동(현재 단동)에 도착한 후 해방이 된 사실조차도 모른 채 같은 날 위 안동에 있던 일본국 소유의 만주 중앙은행에서 3년간 피땀흘려 모았던 일본국 화폐 합계금 17,900원(圓)을 고향으로 송금하고 그에 대한 1945. 8. 21.자의 같은 은행 발행의 ‘통상위체증서’를 받았으나 이 경우는 1945. 8. 15. 이후 비통상의 접촉의 과정에서 취득된 청구권의 하나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신고법 제2조 제1항 제 1·5·7호에 게기된 소정의 신고대상 청구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또 김형준 씨는 해방 이전에 중국으로 건너가 호북 성 한구시에 거주하면서 여러 사업을 하여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는바, 1945. 8. 하순에야 해방 소식을 듣고 같은 해 9. 2.부터 9. 6.까지 3회에 걸쳐서 자신을 재산을 일본 국책은행인 주식회사 대만은행에 송금하였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나) 청구권신고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미해당

김성수 씨는 1943. 3. 20. 일본군으로 강제 징집

되어 육군보병 제144연대 소속 상등병으로 복무하던 중 1944. 12. 12. 미얀마 남부지역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미얀마 라이가 소재 제121병참병원에 입원 중 다시 연합군 비행기에 폭격당하여 1945. 3. 4. 오른쪽 팔을 절단당하고 한문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8. 15 해방과 동시에 귀국하였다. 그런데 피징용부상자의 청구권은 피징용사망자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1945. 8. 15. 이전까지의 청구권으로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일괄타결된 대일 민간청구권의 하나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신고법 제2조 제1항은 피징용 사망자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제9호에서 신고 대상으로 명백히 규정하면서도 피징용 부상자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신고 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다. 판결 내용

(1) 다수의견

위와 같은 사유로 3인의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에 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立法不作為)에는, ①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Lucke)이 있는 경우’(즉, 입법권의 불행사)와 ②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Fehler)이 있는 경우’(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眞正)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不眞正)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 즉 본래의 의미에서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즉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의 결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이 경우에는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 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제소기간(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89. 7. 28. 선고 89헌마1 결정, 1993. 3. 11. 선고 89헌마79 결정, 1993. 9. 27. 선고, 89헌마248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위 사건들의 경우에는 입법자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일괄타결된 청구권에 대한 보상관계 입법을 하면서 보상입법을 불완전 불충분하게 함으로써 입법의 결함이 생긴 사실은 인정되나 입법자가 그 청구권에 관련하여 전혀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심판대상인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입법부작위가 아니고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 내에’ 청구권신고법 등 보상관계 법률의 관계규정과 각 그 폐지 법률을 대상으로 하여 그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보상관계 법률들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의 일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1988. 9. 19.부터 180일을

훨씬 경과한 1995. 5. 30.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여 심판청구들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마108 결정, 1996. 10. 31. 선고 94헌마204 결정, 1996. 11. 28. 선고 95헌마161 결정 등 참조).

(2) 소수의견

하지만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소수의견은 "대일 민간청구권 부분에 대하여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하여 청구권자금법, 청구권신고법, 청구권보상법 등 3법을 입법하면서도 그 청구권의 신고 및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등 아무런 보장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이후 현재까지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청구인들은 이러한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바로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입법부작위를 진정·부진정의 두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논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초기에 유지하고 있었던 2분법에 불과하며, 근래에 위 재판소도 이 2분법의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점에서도 다수의견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2분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들의 심판대상의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를 예컨대 헌법상 입법의무의 대상이 되는 입법사항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각 입법사항에 관하여 모두 규율하고 있으나 입법자가 절적·상대적으로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며, 이와는 달리 위 입법사항들 중 일부의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규율하면서 나머지 일부의 입

법사항에 관하여서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 양적·절대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정입법부작위로 보고 그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들이 많다.

그런데 위 3법은 청구인들의 문제에 관하여는 불완전 또는 불충분하나마 규율하려고 한 바도 없는 등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라고 봄이 마땅하며, 청구인들은 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대일 청구권 신고조치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청구인들의 경우가 위 3법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시인하면서도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강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입법자가 재량으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유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설명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그리고 진정입법부작위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바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89헌마2 결정 참조) 본안판단을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위 3법의 입법 미비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나 헌법소원청구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작위의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결국 피해자들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하였다.

4. 헌법소원을 통한 구제방안: 재일한국인의 경우

가. 중재위원회 설치 청원과 관련한 헌법소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2항 (a)호를 염두에 둔 청구권신고법 제2조 제1항은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의 청구권을 신고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서 재일한국인은 위 3법 제정시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버려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다면 아무런 구제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재일한국인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에게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재일한국인의 연금수급청구권은 클레임을 제기하는 지위에 지나지 않아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2항 (a)호에서 말하는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일한국인의 보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일한국인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 위 조항의 해석을 요구하자 한국 정부는 장애연금수급권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2항 (a)호에서 말하는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여 결국 한일청구권협정의 교섭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996. 1. 17. 재일한국인 피해자들이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줄 것을 청원한 것에 관한 회신에서 "외교적 노력은 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중재위원회의 설치나 한일청구권협정의 재협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그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의 특정항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는 양국 정부가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결정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고, 특히 재일한국인 피해자들은 거의 80이 넘은 고령이어서 연금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고 언제 사망할지도 모르는 처지이므로 재일한국인의 청원은 재외국민이 정

부에게 긴급하게 외교적 보호를 요청한 것이어서 정부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도 아직까지 중재위원회 설치문제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 부작위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나. 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1987. 10. 29. 개정된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만 규정하였다.

재외국민과 관련된 법률은 재외국민등록법(1949. 11. 24. 법률 제70호), 재외국민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조치법(1973. 6. 21. 법률 제2622호), 재외동포재단법(1997. 3. 27. 법률 제5313호) 등 3개의 법률만이 있으며, 특히 헌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고 난 후에 제정된 법률은 결국 재외동포재단법 단 하나뿐인데 위 법의 목적은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이어서 재외국민 보호와는 별 관계가 없는 법률이다.

이와 같이 재외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재외국민을 보호할 실제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현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에 의하더라도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이 재외국민 관련 법률이 3개나 있으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거나, 위 법률들이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검토한다면 과연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법률

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1989. 3. 17. 사법서 사법 시행규칙의 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사 건에서 “무릇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 이를 방지할 것인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세계관적 고려에 서 정해지는 것이며, 따라서 일반 국민이 입법을 해 달라는 청원권을 향유하고 있음은 별론이로도 입법 행위의 소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은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며, 이때에는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88헌마1 결정)고 하였다. 현 정부는 재

외국민에 대한 기본정책이 부재한 형편이며, 위와 같이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러한 무관심과 무정책은 개선될 전망마저 없다. 그러므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를 통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할 기반을 마련하여야만 재일한국인 문제도 근원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5. 결론

한국 정부는 일본 식민지 지배 하에 강제징집·징용되어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조치를 현재까지 취하지 않고 있으며, 사법적인 구제도 현재로서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므로 이들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며, 재일한국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이번 헌법소원은 그들만이 아닌 모든 피해자들에게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과 분별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일한국인의 보상문제 중재요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

청구인

1. 석 성 기

일본국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호도가야구 미네사와정 312
NIC하이무 미쓰자와 사쿠라다이 A-401

2. 진 경 일

일본국 사이타마현 후카야시 가미시바정 니시 5-7-66

3. 정 삭 진

대한민국 제주도 제주시 이도 2동 370-20

4. 강 부 중

일본국 시가현 고오가군 고오세이정 마쿠모 1115

5. 조 용 수

일본국 도쿄도 가쓰시카구 가메아리 2-32-17-206
위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서울 서초구 방배동 1808 안석빌딩 3층

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안산시 고잔동 527-6 안산빌딩 302호

담당변호사 임종인, 장완익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송달장소)

담당변호사 김준곤, 이춘희, 오충현, 성상희, 최봉태

침해된 권리

헌법제23조(재산권), 제11조(평등권),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기본인권, 행복추구권)

침해의 원인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인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재일한국인의 보상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에 관해 중재요청을 하여줄 것을 청원하였음에도 이에 관해 부작위에 그친 공권력의 불행사

청구이유

1. 청구인에 관하여

청구인 석성기는 1921. 12. 13.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도홍동 1218번지에서 태어나 선남면사무소 촉탁으로서 농업지도원으로 일하다가 1942. 7. 26. 징용에 의해 해군 군속이 되어 마샬군도에 배속되었습니다. 그 후 1944. 5. 26.에 위체섬에 진지 구축작업 중에 연합군 전투기의 기총사격을 받아 오른팔 15cm를 남기고 절단당하고 1945년 10월 일본국 우라가에 귀환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한국인입니다.

청구인 정석진은 청구 외 정상근의 장남으로서 청구 외 정상근은 1921. 11. 10.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면 하도리 3322번지에서 태어나 제주도에서 생활하던 중 일본국 해군의 군속으로서 징용되어 1943. 11. 15. 경 남양마셜제도 웨체섬에서 비행장수선 등의 노동에 종사하다가 연합군의 포격을 받아 右前腕切斷創, 胸部, 左右上肢, 左右耳, 左右眼爆傷 등의 상처를 입어 종전 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사카에서 살다가 1996. 2. 29. 위 오사카에서 사망한 재일한국인이며 그 상속인인 위 청구인은 현재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강부중은 1920. 5. 7.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봉현리 109번지에서 출생하여 14~5세경 일본국으로 옮겨와 살던 중 1942. 11. 말경 국민징용령에 의해 징용되어 남방에서 비행장 건설작업에 종사하면서 경비근무를 하던 중 1945. 2. 13. 전투기의 기총사격을 받아 오른손의 모지를 남기고 나머지 손가락을 전부 절단당하고 오른쪽 눈썹 아래부분에 총탄파편을 맞아 오른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는 중상을 입은 장애를 가지고 위 거주지에서 살고 있는 재일한국인입니다.

청구인 조용수는 1928. 9. 20. 경상북도 달성군 월배면 하동 785번지에서 출생하여 1944. 6. 도쿄제철 해군관리공장에 연행되어 군사훈련을 받으며 징용공으로 일하다가 동년 9월 작업중에 사고를 만나 우측 팔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의 큰 상처를 입고 위 거주지에서 살고 있는 재일한국인입니다.

청구인 진경일은 청구 외 진석일의 상속인으로 청구 외 진석일은 1919. 1. 21. 경상남도 거제군 동부면 학동리에서 출생하여 1934년 선원으로 일본에 갔지만 1939년 승선중인 배가 군에 징용됨으로 인해 군속이 되었고, 1945. 4. 파역파판을 향해 도중 연합군의 비행기 공격을 받아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어 무릎 부분 3분의 1을 남기고 절단당한 채 일본국에 거주하다가 1994. 5. 14. 사망한 재일한국인입니다.

청구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구인 석성기, 강부중, 조용수(이하, 본인인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일본국에 의해 징용당하여 군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를 직접 입은 사람들이고, 청구인 정석진, 진경일(이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그 상속인입니다.

2. 공권력의 불행사의 위법성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의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동 제11조에 의하면 법 앞

에 평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 현재 청구인들은 재외국민 또는 그 상속인으로서 일본국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보호를 긴급하게 받아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고도로 발생하여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구인들의 수차례의 간접한 청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기본적 인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직위의무를 방기하고 부작위에 그치고 있는바, 그 공권력 불행사의 위법을 확인받기 위해 본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의 발생

(1) 청구인들의 장애연금수급권의 발생

일본국의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1952년 일본국 법률127호, 이하 원호법이라고만 한다)은 군인군속 또는 준군속이 전쟁공무 등에 의해 부상, 질환이 생기고 이로 인해 장애가 남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국가보상의 정신에 의해 장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유족을 원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동법제1조). 본인인 청구인들 및 상속인인 청구인들의 피상속인들은 젊은 나이로 전쟁터에 징용당하고, 일본국이 수행한 전쟁 도중에 중한 상해를 입어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고국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국에 남아 고령의 나이로 전쟁중 입은 상해의 후유증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한편으로는 상속인인 청구인들의 피상속인들은 고통 끝에 세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원호법이 정하는 국가보상의 정신에 의해, 그리고 재일청구인들은 일본국에서 납세의 의무를 비롯한 제의무를 지금까지 지고 왔으므로 사회보장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일본국으로부터

연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인 청구인들은 원호법에서 말하는 군속이고 복무중 부상을 당하였기에 동법에서 정하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아야 할 지위에 있고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그 권리를 수계하여 이를 지급받을 지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 석성기의 경우, 그 금액은 장애 정도가 위 원호법 제8조상의 제3항중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년간 약 3,581,000엔(한국원으로 환산하여 약 5,000만원, 단 100엔=1,400원으로 환산)을 받아야 할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호법 부칙 2항에 정한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관하여는 당분간 이 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참고로 한일합방에 의해 조선인은 일본국민으로 되었지만, 조선과 일본열도는 異法지역이 되어 일본인은 호적법의 적용을 받고 조선인은 조선호적령의 적용을 받고 있었음)에 의해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고, 이에 본인인 청구인들은 80세 고령을 보는 현재 연금 수급의 필요성은 높아져감에 따라 위 부지급의 부당성을 점점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 석성기는 1991년 일본국 후생대신을 상대로 원호법에 정한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위 원호법 부칙에 의해 각하되었고, 이것에 대한 이의신청도 1992. 6.에 기각되어 다시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하였으나 1994. 7. 15. 또 다시 기각되어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청구인 강부중은 1993. 9. 30. 일본국 후생대신을 상대로 같은 장애연금을 청구하였으나 1994. 1. 7. 같은 이유로 각하되었고, 동년 4. 22. 이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95. 1. 11. 이의신청마저 기각되어 다시 大津지방재판소에 제소하였으나 1997. 11. 17. 다시 기각당하여 지금 오사카고등재판소에 항소중입니다. 청구인 조용수는 1995. 3. 위 청구인들과 같이 장애연금을 청구했지만 동년 12월에 같은 부칙에 의

해 각하되었고, 1996년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해 불복 신청을 하였으나 1997. 1.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 진경일의 피상속인 진석일은 1991. 4. 2. 일본국 후생대신을 상대로 원호법에 정한 장애연금을 청구했으나 1991. 10. 4. 각하되었고, 1992. 1. 10.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동년 6. 19. 기각되어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하였으나 1994. 7. 15. 기각되었고, 결심 후인 1994. 5. 14. 판결을 앞두고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청구인 진경일이 소송을 수계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청구인 정석진의 피상속인 정상근은 1991. 11. 12. 일본국 후생대신을 상대로 원호법에 의한 장애연금을 청구했으나 1992. 8. 7. 위 같은 이유로 각하되어 1993. 2. 5.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94. 1. 10. 다시 기각되어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하였으나 1995. 10. 11. 기각당하였고 항소심 계류중인 1996. 2. 29. 끝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청구인 정석진이 소송을 수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모두 일본국을 상대로 현재도 장애연금의 청구를 다투고 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 등의 판시내용은 원호법 부칙 2항의 규정취지가 조선반도 출신자를 원호법의 적용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헌법 14조 1항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합리적 차별이기 때문이며 청구인들과 같은 재일한국인의 경우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외교 교섭에 의해 해결이 되도록 전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원호법 부칙의 위헌성을 다투는데 있어 청구인들과 같은 재일한국인의 보상문제가 위와 같이 외교 교섭에 의한 해결이 전제되었는가 그리고 이에 따라 외교적으로 해결이 되었는가 여부가 청구인들의 장애연금청구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2) 일본국 정부의 논리

(가) 원호법의 등장

일본국은 전전에 군인이 부상, 질환에 의해 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은급법에 의한 장애은급과 공무부조료를 지급하여왔습니다. 1945. 12. 25. GHQ(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이 제도야말로 세습군인계급은 일본의 침략정책의 큰 원천이 되었다. … 군국주의자가 다른 다수의 희생에 있어서 극히 특권적인 취급을 받는 것과 같은 제도는 폐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은급법의 특례에 관한 전이 제정되어 중도의 상병자에 대한 은급을 제외한 군인은급은 정지되었습니다. 일본국의 군국주의 및 침략전쟁의 배경이 은급법이었다는 판단에 기초로 하여 일본의 군국주의세력의 악화라는 필요에 의해 GHQ는 위와 같이 강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52. 4. 28.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자 일본국 정부는 불과 2일 후에 원호법을 공포·시행하고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의 원호를 개시하는 등 13가지의 원호입법을 제정했습니다. 당초 원호법의 적용 대상은 은급을 폐지당한 군인과 그 유족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1953년 8월 군인은급이 부활되자 군인 및 그 유족의 대부분은 은급제도로 이양되었고 위 원호법의 대상은 군속과 준군속 즉 구 군내부의 피고용인, 징용공 등과 그 유족으로 되었습니다. 이와 이율러 이후 전쟁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제도는 매년 확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후보상제도가 매년 확충되는 가운데 그 배경과 적용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양심적인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그중 핵심은 당초 GHQ가 우려했던 바가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상제도가 확충되었다는 점과 이율러 무엇보다 이상의 13가지 입법은 모두 국적조항을 두고 한국인, 대만인 등 구 식민지 출신자를 원호대상으로부터 배제한다는 점입니다.

(나) 원호법의 배제논리의 부당성

그러나 원호법에 정한 장애연금 등의 지급은 당시 일본제국 신민으로서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던 것을 원인으로 한 전사상자 등에 대한 보상이고, 전사상 당시 일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가 호적법의 적용을 받고 있었던가 아닌가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가 아닌가를 결정함에 본질적 요소는 아니고, 호적법의 적용을 받고 있었는가 아닌가에 의해 전사상자 등을 차별하는 것은 아무런 합리성도 있지 아니합니다. 무릇 국가의 행위 내지 활동에 의해 특별한 희생 내지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국가보상의 정신에 비추어보면, 식민지 지배라는 위법상태에 있어 일본국가의 전쟁 수행의 희생이 되었던 한국인, 대만인에 대하여는 일본국이 솔선해서 보상을 할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을 가질지언정 이 점에 관해 일본인보다 불이익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구 식민지 출신자들을 원호법이 배제하는 이유는 이들이 대일평화조약을 계기로 일본국적을 상실당하고 외국인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에 기인하는 것인데, 동 조약이 발효될 당시 스가모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29인의 조선인과 1인의 대만인이 1952. 6. “평화조약 발효와 동시에 동시에 일본국적을 상실했기에 조약 11조에서 말하는 ‘일본국민’에는 해당되지 않아 구속을 받아야 할 근거가 없다”고 인신보호법에 의한 석방 청구를 요구하였으나 동년 7. 30.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이를 기각하며 “전범으로서 형이 과하여진 당시에 일본국민이고 평화조약 발효 직전까지 일본국민으로서 구금되어 있던 자에 대하여는 일본국은 조약 11조에 의해 형을 집행할 의무를 지고 평화조약 후의 국적 상실 또는 변경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최고재판소 판결과 전후보상입법의 국적조항을 비교하면 국적을 잃으면 죄는 넘지만 보상은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논

리적 모순의 심각성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종의 사안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견해(1989. 4. 3.)에 비추어보아도 일본국 원호법의 차별성은 명백합니다. 사안은 1960년 세네갈 독립 전에 프랑스 육군에서 군무원으로 일했던 세네갈인이 세네갈 독립 후도 프랑스 국내법에 의해 프랑스의 옛 군인과 같은 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1975. 1. 1. 이후는 연금액이 동결되도록 한 것에 대해 B규약 26조의 법앞의 평등에 반한다고 하여 B규약의 선택의정서를 근거로 인권위원회에 통보된 사안입니다. 이 통보에 관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적의 변경은 그것 자체 별다른 취급을 정당화하는 근거로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연금 지급의 근거는 군무를 제공했던 것이고 세네갈인도 프랑스인도 제공한 군무는 동일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통보자들에 대한 별다른 취급은 합리적 객관적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규약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을 수행할 때는 일본국민이라 하여 식민지 출신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일본국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고, 전쟁이 끝나자 식민지 출신이라 하여 국가의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의 정신에서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국가보상의 기본 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 구 식민지 출신자에 대한 보상의 현실

그런데 구 식민지 출신자를 원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의 당부에 대해 일본국 최고재판소 판결(1992. 4. 28. 제3 소법정)은 대만인 상이군인, 군속 등의 보상청구재판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대만인 상이군인, 군속이 원호법 및 은급법의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것은 … 대만주민인 군인군속에 대한 보상문제가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에 의해 해결되도록 예정되었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는 충분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일본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국적조항 또는 호적조항의 합리성을 2국간의 조약에 의해 해결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것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정된 외교적 교섭이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외교적 교섭이 이루어졌더라도 일부 주민에 대해 공식적으로 배제되거나 추후 논의하기로 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교섭을 하였더라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경우 개인의 권리도 소멸되는가 등 허다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1) 대만인의 경우

일본과 대만 사이에 군인군속 전사상에 대해 교섭이 되고 있지 아니하던 중에 일본과 중국 간의 공동 성명(1972. 9. 29.)이 발표되어, 일본과 대만 사이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외교 교섭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2국간의 조약에 의해 해결이 예정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외교교섭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여 대만인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 포기에 다름 아니고 실제 대만주민인 구 일본군인 군속의 중도 전상자 및 전몰자 유족에 관해서는 이 소송 계속중에 대만주민인 전몰자 유족 등에 관한 조위금 등에 관한 법률(1987. 법률 제105호), 특정조위금 등의 지급 실시에 관한 법률(1988. 법률 제31호)이 제정되어 전몰자 또는 전상병자 1인당 200만엔의 조위금 또는 위로금이 지급되도록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만인의 경우는 정부간의 외교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오히려 일본법에 의해 일부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국가보상법의 정신 및 국제 인권법, 타국간의 비교에 의하더라도 불평등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 한국인의 경우

대만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조선에 관하여는 1965년에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습니다. 청구권협정에 의하면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과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으로 끝을 확인한다”(제2조 제1항)로 되었지만 이것은 일방의 체약국의 국민이 1947. 8. 15.부터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 체약국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했던 적이 있는 자(재일한국인은 이 경우에 해당)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동조 제2항 (a))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청구권협정 발효 후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1971년 법률 2287호),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1974. 법률 제2685호)을 제정하고 일본국에 의해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 8. 15. 이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 일본국 통화 1엔당 3원으로 하여 1인당 30만 원(10만엔)을 지급하였으나, 문제는 재일한국인의 경우인데 한국 정부는 재일한국인의 보상에 관해 입법을 한 사실도 없고 어떠한 보상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보듯 청구권협정의 해석을 일본 정부와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3) 재일한국인의 보상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종결이 되었는가

위와 같이 청구인들과 같은 재일한국인의 경우는 위 청구권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양국 어느 쪽으로부터도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일본 측은 한일 간의 외교 교섭에 의해 재일한국인의 보상문제도 해

결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에 외교 교섭의 결과인 위 청구권협정에 의해 재일한국인의 보상문제도 최종적으로 완전히 끝이 났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청구인들과 같은 재일한국인을 원호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차별로서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해석은 전혀 이와 다릅니다. 양국간 입장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청구권 협정 조항의 해석상 차이로 나타났고 이는 결국 위 청구권협정 제2조 제2항 (a)에서 협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 재일한국인의 보상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는가 아닌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가) 일본국 정부의 해석

청구인들의 원호법상의 장애연금수급권이 위 청구권협정 제2조 제2항 (a)에서 말하는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청구인들의 장애연금수급권은 클레임을 제기하는 지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동 협정 제2조 제2항 (a)에서 말하는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재일한국인의 보상청구권도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청구권협정 서명일 이후에는 재일한국인이 귀화를 해도 원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명일 이전에 일본에 귀화를 한 한국인의 경우에 원호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은 일본에 귀화함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외교보호권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 결국 외교상의 협의에 의한 해결의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외교상의 협의를 이유로 하여 원호법의 적용 대상자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나) 한국 정부의 해석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 정부로부터도 재일한국인

은 일체의 보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청구인 등 재일한국인이 가지는 청구권은 위 청구권협정 제2조 제2항 (a)에서 말하는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기에 청구인들과 같은 재일한국인의 권리가 양국간에 위 청구권협정에 의해 끝난 것이 아니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일한국인의 보상문제 등은 새로운 협정에 의해 해결되든가 아니면 일본인과 같이 동등하게 취급되거나 혹은 대만인에 대한 경우와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물론 이 경우는 일본인과의 차별이 여전히 문제됨)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양국 정부의 청구권협정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객관적 증거

위와 같은 해석상의 불일치에 대해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인들은 재판 진행중에 위 청구인들이 가지는 장애연금수급권이 청구권협정 제2조 제2항 (a)에서 말하는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여 결국 청구권협정의 교섭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를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회신받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1995. 10. 11.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청구인 정석진의 피상속인 정상근이 일본국 후생대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에서 재일한국인의 원호법상의 권리가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한일 양국 정부간에 견해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양국 정부간의 청구권협정 조항상의 해석 불일치를 사실인정한 뒤 위 청구권협정에 의해 한국이 재일한국인의 군인, 군속에 관해서 당연히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예정되어 있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으므로 동 협정의 체결을 가지고 재일한국인을 원호법의 적용 대상 외로 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오사카지방재판소의 판결은 청구권협정 제

2조 제1항 및 제2항의 법해석 자체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지만 사실인정으로서 청구권협정에 의해 재일한국인의 보상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시한 점에서 우리 정부의 해석과 일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일본국 후생성 사회원호국장은 위 판결이 일본국 정부의 종전 해석에 대한 전면 부정에 이어지는 것이라고 참의원 후생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1993년 10월에 열린 유엔의 국제인권규약위원회는 원호법의 국적차별에 대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코멘트를 채택한 것도 청구인들과 같은 재일한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나. 공권력 불행사로 인한 위법성

(1) 위와 같이 청구인들의 경우는 청구권협정에 관한 일본국 정부의 일방적 해석에 의해 그 보상에 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간주되고 있고 이러한 해석을 기초로 원호법에 의한 배제논리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만약 청구권협정에 관한 우리 정부의 해석을 채용한다면 청구인들과 같은 재일한국인에 관해 위 청구권협정의 체결로 원호법의 적용을 지금도 배제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그 차별은 위헌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구권협정의 해석과 관련된 양국정부의 해석 차이로 인해 청구인들은 지금도 심대한 정신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 청구인 석성기는 일본국 정부의 해석의 부당성을 항의하며 단신으로 총리관저에 차를 돌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구인들의 절박한 권리구제요구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일본국 정부의 일방적인 청구권협정의 해석입니다. 우리 정부의 해석과는 다른 입장을 고수하며 일본국 정부는 청구인들의 청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정부의 해석이

옳다고 한다면 청구인들은 원호법의 호적조항에 의한 배제가 합리적 차별에 해당되지 않아 위헌임을 주장하여 원호법에 규정된 장애연금을 받게 되거나, 혹은 새로운 정부간의 교섭이나 입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것이 예상됩니다.

본인인 청구인들 및 상속인인 청구인들의 피상속인들은 식민지시대에는 국가의 주권이 상실당한 관계로 일본국의 침략전쟁에 징용당하여 신체의 일부를 절단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장애연금 등 보상에 관한 권리 등에 관해 만약 위 청구인들이 재일한국인으로서의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국적으로 귀화를 했더라면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하여왔을 것입니다(실제 이러한 이유로 많은 재일한국인들이 부득이하게 귀화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식민지 지배가 위법부당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식민지 지배에 대해 일본국의 진실한 사과와 이에 대한 배상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국적으로 귀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풀뿌리를 먹고 살지라도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국적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재외국민을 보호할 법적 의무를 가진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적어도 위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해 양국 정부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는 이상 위 청구권협정 제3조가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를 중재에 붙여 해석상의 다툼을 신속히 종결시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 협조할 작위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위 청구권협정 당시 청구인들과 같은 재일한국인의 보상문제를 양국간의 교섭에서 제외시킨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청구인들이 소송을 하기까지 이른 분쟁의 현재에 있어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최소한의 의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최고 법규범인 우리 헌법은 제2조 2항에 “국

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1980년 헌법의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소극적 보호자세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재외국민의 보호가 국가의 의무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면 및 그 개정의 경위를 보더라도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는 국가의 법적 의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며 만약 구체적인 법률이 없어 법상의 의무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없다고 한다면 이는 헌법을 하위 법률이 형해화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법률 제정의 부작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아니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수호하여야 할 하위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재외국민이 국적을 포기하는 일이 실제 일어났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위 재외국민 보호 의무조항 이외에도 헌법 제10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규정 및 동 제37조에 의해, 나아가 조리상으로도 청구인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및 이익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이 국제법규의 국내법상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국제(관습)법상 국가는 재외국민이 재류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법하게 권리의 침해받을 때는 재류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이러한 외교적 보호권 내지 재외국민보호권은 국제법규에 의해서도 인정이 되는 것이고, 재외국민이 정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 정석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제주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로서, 모든 국내법의 제약을 받으며 일체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고 있어 하등 국내의 내국인에 비해 보호를 차별적으로 받을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3) 헌법소원에 있어서 공권력의 불행사와 일반 소송에 있어서 위법부작위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본건 헌법소원은 인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소원이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 어진 제도로 공권력의 행사는 물론 불행사의 경우에도 그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이 다루어지는 경우와 비교하여 더욱 포괄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하며, 입법부의 태만으로 법의 불비가 있더라도 기본권의 침해가 심각할 경우 이를 기본권 수호의 차원에서 입법부에 대하여도 입법화를 촉구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헌법과 법률을 집행해야 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다언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본건 헌법소원의 본인인 청구인들은 80 고령으로 언제 세상을 달리할지 알 수 없고(상속인인 청구인들의 피상속인들이 소송 계류중에 사망한 것은 이를 입증한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기본권 침해의 중대성이 막중하고 그 구체의 필요성이 극히 고도의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본인인 청구인들은 80 고령으로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연금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류국인 일본국에 의해 불법하게 권리의 침해받고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며 그 근거가 위 청구권협정의 관련조항입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장애연금 수급의 장애가 되는, 즉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한일 간의 외교교섭에 의해 재일한국인의 보상문제는 종결되었고 그 근거가 청구권협정인지에 관해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

를 확인하였던바 그렇지 아니하다는 회신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정부는 해결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며 청구권협정 관련조항의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상의 다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 협정에 중재를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재를 통한 해결은 위 청구권협정이 예정하고 있는 바이며 양국 정부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방법입니다.

청구인들은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국 정부에 대해 중재의 요청을 한다면 당연히 중재 의견으로 위 청구권협정에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보상이 예정되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기에 청구인들의 장애연금수급 권리가 위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되리라 믿고 있고, 그 믿음에는 국제법상의 원리, 유엔 인권규약위원회의 해석, 타국과의 비교, 보상의 현실, 일본국 사법부의 최근의 판결 등에 비추어 고

도의 가능성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위와 같이 재외국민의 신체 및 생명에 관해 급박한 보호의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청구인들이 그 보호로써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 중재요청을 일본국 정부에 해줄 것을 요구하였던바, 대한민국 정부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중재요청을 할 것인지 아닌지 회답치 아니하고 부작위에 그치고 있는바, 이러한 공권력의 불행사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일본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 요청을 할 것을 구하며 본건 헌법소원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생략

1998. 6.

헌법재판소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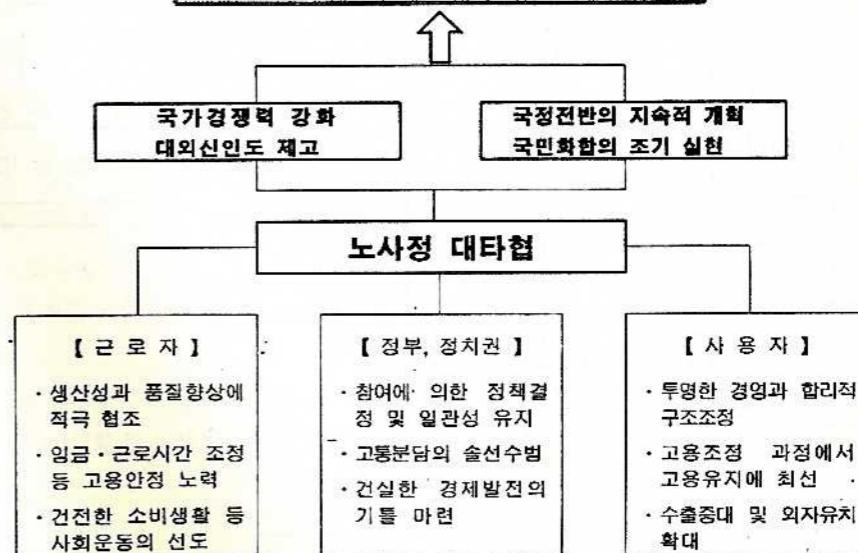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운영계획

I. 목표 및 기본방향

1. 목표

21세기 선진국가로의 도약



2.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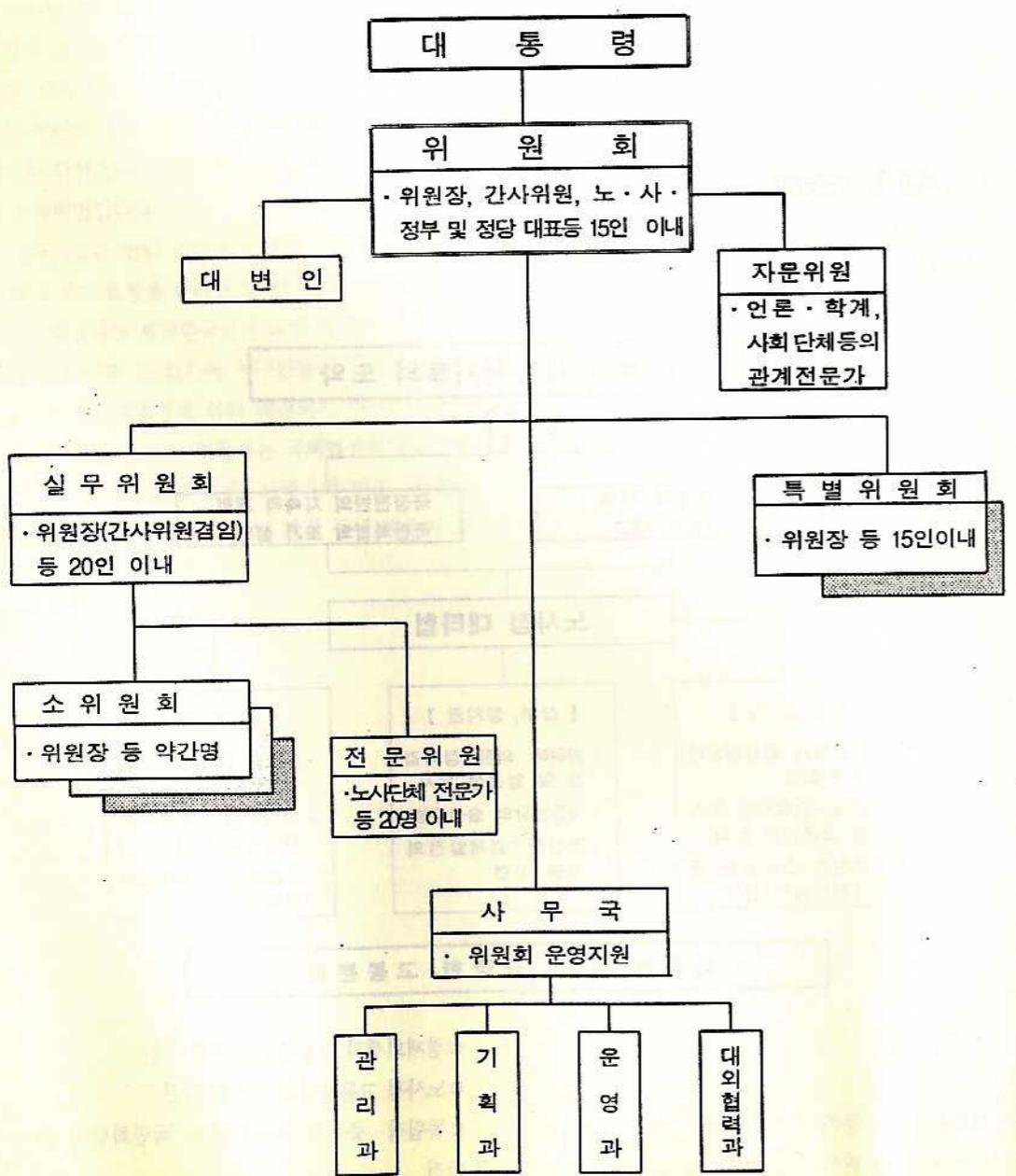
- ▣ 노사정의 대등한 참여와 협력
- ▣ 국난극복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

대등한 참여, 공정한 고통분담

- ▣ 경제회생과 고용안정의 병행 추진
- ▣ 노사정 고통분담의 기본틀 마련
- ▣ 독립적·중립적 운영을 위해 '국민화합의 장'으로 발전

II. 운영체제

1. 기구



2. 회의체

4. 위험회

- 위원장, 간사위원 각 1인을 포함한 근로자, 사용자, 정부 등을 대표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정기회의 월1회, 임시회의 수시 개최
 - 고용안정, 노사협력, 경제위기 극복 등 현안문제 해결 방안의 심의·의결

4. 실무위원회

- 실무위원장(간사위원이 겸임)을 포함 노사단체 및 관계행정기관과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필요시 부문별 소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4.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부문별로 구성·운영
 - 관련부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특위위원장은 위원 중 중립적인 인사를 위원장이 지명
 -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조사의뢰 등 이행을 촉구하고 필요시 조사에 착수

보조기구

4. 전문위원

- 의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가 20인 이내
 - 효율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수석전문위원과 책임전문위원을 선임하여 전문위원의 활동을 조정하

계 합.

나. 자문위원회

- 위원회 활동방향, 주요 의제에 대한 여론수렴 등 위원장의 활동에 관한 자문을 위해서 구성·운영
 - 언론제, 학제, 노사단체, 시민단체, 법조계, 종교계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다. 대포인

- ### ○ 위원회 활동에 대한 홍보업무 수행

라. 사무국

- 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행정사무 수행
 - 위원장은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아닌 타자수 운전원 등을 둘 수 있음

III. 위원회 운영절차

1. 의학의 삼정

- 위원은 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발의된 의안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상정
- 관계행정기관, 노사단체 전문가 및 전문위원 등 의 겸토·조정을 거쳐 합의문안 또는 보고서 마련

2. 의안의 심의·의결

- 상정된 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추진
과제로 확정

3 확정과제의 추지

- #### ○ 합의된 확정과제를 대통령께 건의

- 대통령 재가 후 정부 등 관련기관에서 후속조치
- 위원회에서 이행사항 점검

IV. 주요사업 추진계획

□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의 충실햄 이행과 국정 전반의 개혁을 선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 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생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상 정립

1.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체계 구축

○ 목적: 합의사항의 신속한 이행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사정간의 신뢰성과 국정개혁의 선도 역할 제고

○ 절차 및 방법

- 사무국이 이행실태를 종합·정리하여 실무위에 보고

- 정부측 소관사항은 노동부에서 취합·정리
- 전문위원은 사안별 이행상황을 분석·평가
 - * 필요시 관계행정기관 실무자의 출석·답변을 요청
- 실무위에서 특위와 긴밀한 협조 및 노사정의 의견수렴·조정을 거쳐 본위원회에 보고
 - 이행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연구·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
 - 본 위원회는 부진한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및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실무위를 통해 지속적인 이행점검

2.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대상부문(2): 부당노동행위, 공공부문 구조조정

○ 특위별 구성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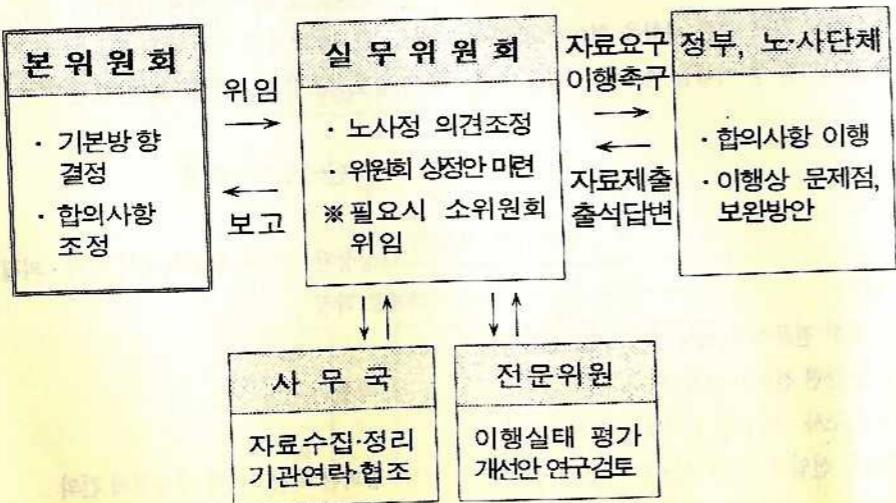
- 노사, 정부, 정당 및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15인 이내

· 공익실무위원 2인 이내

· 노사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각 2인

· 정부측 참여

〈이행 점검 체계도〉



- 국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추천 인사 각

1인

· 공익대표로 법조계·연구기관 전문가 참여

· 특위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 특위의 기능 및 운영체계

- 노동계 등이 제기하는 문제사안을 검토·협의하여 정부측에 자료제출, 출석설명을 요청

-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부측에 조사의뢰하고 결과를 설명토록 요청

- 조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위 위원을 관계행정기관의 조사에 참관시킴

- 특위에서 결론지은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측에 신속한 이행 또는 시정조치(관계자 사법처리 등 포함) 등을 요청

3. 추가 합의도출

○ 2차 과제와 사회 전반의 개혁에 관한 추가과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의 합의도출에 노사정의 힘을 결집

○ 경제위기 극복과 실업대책 등 노사가 제기하는 현안과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

○ 합의 가능성성이 높은 과제를 초기에 취급하여 초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원만한 운영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위원회상 구축

※ 2차 주요과제

-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 경영참가 및 우리 사주제 활성화, 책임경영 등

-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 실직자 지원, 일용직 고용보험제 도입 등

- 사회보장제도 확충

- 퇴직금제도 개선문제, 사회보험 발전방안 등

-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

·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정 협력방안 등

- 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노사관계확립

4.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정책토론회 개최

- 목적: 노사정 협력방안 도출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주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력방안

- 발제 및 토론

· 발제: 공익위원 또는 학계 인사 중 선정

· 토론: 노사정이 추천하는 관계 전문가 각 2인

*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토론과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발제자와 토론자는 기급적 지역인 시를 선정

- 개최 지역: 서울, 부산, 울산, 창원 등 대도시와 근로자 밀집지역 6개소 이내

- 시기: 발표문 준비 등을 감안하여 7월 중순~7월 말 기간 중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집중적으로 개최

○ 국민제안창구 운영

- 목적: 국민의 소리를 위원회 운영에 직접 반영

- 방법: PC통신, 인터넷, 전화 및 서면 접수

- 시기: 98. 7.부터 위원회 활동 종료시까지

- 제안서 처리

· 일반민원: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이송

· 단순건의: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 보고 후 종결처리

· 검토제안: 실현 가능성성이 높은 정책제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노사 등의 의견수렴 후 안건으로 채택

○ 여론조사

- 목적: 위원회 활동방향과 대국민 홍보 등에 활용

- 내용: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활동방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협력방안, 합의사항 이행정도 등

- 방법: 관련연구단체 등의 자문을 받아 조사방향 및 내용을 정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 시기: 7월부터 분기별로 1회 실시

○국내·외 홍보활동 적극 전개

- 위원회 출범 의의, 구성, 기능, 역할, 운영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담은 「안내 팜플렛」제작/배포(7월 초)

- 위원회 소식지 발행

- 주 1회(필요시 수시) 제작
- 노사단체, 정당, 관계행정기관, 언론사 등 300

여객소

- 위원회 활동상황을 국제사회에 신속히 홍보하여 대외신인도 제고 등 경제위기 극복에도 적극 노력

- 국제노동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계

- 각종 언론매체의 총체적 활용

- 국정신문, 나라경제 및 노사단체와 국회 등의 간행물에 대한 투고

- 신문·방송에 대한 신속한 보도자료 및 인터뷰,

기자간담회 수시 개최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과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도재형

1. 서론

가. 제2기 노사정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을 했고 막판까지 관심의 초점이 됐던 민주노총도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를 후인 지난 6월 5일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과 정부는 먼저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와 관련하여 노사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이 제도의 남용 방지에 필요한 제반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업종별·규모별로 법정근로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부당노동행위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산업업종별 노사단체간 간담회와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 운영한다는 점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러나 벌써부터 경영계에서는 노사정위원회가 가동되기도 전에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는 점과 부당노동행위특별대책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된다는 점 등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노동계 역시 노사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내부적 반발 및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및 제반 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노측과 사측의 예상되는 불만과 합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적인 변수에 얼마만큼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조정하느냐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의 성패가 좌우 된다고 할 수 있다.

나. 뿐만 아니라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합리적인 노동의 유연화를 법제도적으로 정비하여 장래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토대의 일부분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점에서 노사정위원회에게는 현재의 노동시장 및 경제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나라 노동관련제도에 대한 규범적이고 목적론적인 인식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모범을 보일 수 있으며, 그 모습은 기존의 영미식이나 유럽대륙의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의 김원기 위원장은 지난 6월 3일 출범식에서 세 가지 원칙 - 첫째, 노사정위원회를 행정부의 한 기구가 아닌 사회협약을 논의하는 중립적 위상으로 운영할 것, 둘째,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으로 상호신뢰의 기반을 마련할 것, 셋째, 어느 일방이 부당하게 고통을 전달한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성을 둘 것 - 을 제시하였던바.¹⁾ 이는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운영 뒤에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한 반성에 근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2기 노사정위원회가 우

1) 1998. 6. 15.자 「경영과 노동」, p.9.

리나라 사회발전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

다. 앞서 이용범 위원장이 발제한 바와 같이, 이번에 출범한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과제 역시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것과 비슷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그 논의과제는 크게 정리해고법제 및 근로자파견제, 근로시간의 탄력화로 대표되는 노동의 유연화, 공무원 등의 노동기본권의 보장, 실업제도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및 기업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의 촉진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논의과제 중 특히 노동법분야와 관련된 것은 앞의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관련된 것들인바, 아래에서는 먼저 노동유연화의 개념 정의 및 관련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한 후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발제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2. 노동의 유연화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 대규모 공장생산방식을 전제로 한 노동법은 이제 새로운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이미 많은 기업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능력과 의욕의 차이를 보다 단기적으로 반영하는 처우방식(소위 능력주의, 실적주의)이 시도되고 있고, 이러한 시장

변화에 따라 각국의 법제도도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변화방향은 노동의 유연화를 기한다고 하는 것과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근로자 참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³⁾

일반적으로 노동유연성은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적 자원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배분·재배분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능력”이라고 정의되고 있고,⁴⁾ 이는 수량적 유연성, 기능적 유연성, 임금 유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노동분야에서 유연화는 보통은 규제완화라는 용어와 동일시하기 쉽다. 왜냐하면 노동이라는 요소를 경영상의 필요에 맞추어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서는 각종 노동보호 규정을 완화(배제)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해고제한규정을 완화시킨다면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을 철폐시켜야 노동유연화를 달성할 수 있다든가 하는 경우이다(쟁의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끌어 이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식으로 유연해지는 경우는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노동법의 유연화는 규제완화를 포함하는 광의의 근로조건의 유연화라고 설명하기도 한다.⁵⁾ 하지만 반드시 유연화가 규제완화와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의문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노동장관 라이시는 “유연성은 근로자의 권한을 강화하여 직장 내 위계질서를 완화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하나의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뜻한다. 물론 미국의 유연성이 기업가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유연성은 그 반대급부 때문에 결국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결론이 난다. 유연성은 높은 생활수준을 회생하는 대가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 다를 따내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따라서 노동유연성이라는 개념을 비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적극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나. 생산적인 노동 유연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근로시간의 개혁⁶⁾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숙련을 향상시키고 교육훈련에 집중투자를 하여 고능률작업장을 만들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직장귀속의식을 고취시키고 장기간에 걸친 노사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앞의 교육훈련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실업대책과 연계되어 정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과제를 살펴보면, 주로 실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문제,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제 도입문제, 사회보험제의 완비 문제들이 주요한 논의과제로 채택되어 있을 뿐 직장 내 또는 그룹 내의 교육훈련의 강화 및 산학협동체제 구축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느껴진다. 물론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구제제도의 확립이 시급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장기적 과제로서 직장 내 교육훈련의 강화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뒤의 근로자참여제도의 확충과 관련하여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경영참가법의 제정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그것이 어떠한 제도로서 수립될지는 노사정위원회의 토론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사외이사제도와 같은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실정에서 독일의 감사회와 같은 이사회와 구별되는 기구를 마련할 처지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최소한 이사회나 기타 회사의 집행의결기구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2000년부터 업종별·규모별로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가칭 ‘근로시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임금총액에 대한 감액 없이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몇 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근로시간의 단축은 노동유연성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에 있어서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즉, 임금액의 변화 없는 근로시간의 단축은 장기적 과제로서 논의되어야 하지만, 임금의 감액을 수반하는 근로시간의 단축은 현재도 얼마든지 행해질 수 있다. 그리고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이 일반화

2) 이와 관련하여 김원기 위원장은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노사정위원회가 앞장서며 이를 위해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실업대책, 부당노동행위대책을 더욱 조속히 이행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간다. 둘째,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사정간의 민주적이며 참여적인 협력체제를 조성해 나간다. 셋째, 국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으로 기초를 두고 활동하는 새로운 노사정 관계의 패러다임을 창출한다.

3) 오문완, 「노동유연성과 노동법제의 변화 방향」, 『노동법연구』 제7호, 1998.,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편, p.16.

4) 어수봉,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노동동향분석』 제10권 제3호, 1997., p.56.

5) 오문완, 앞의 논문, p.17.

되며, 그로 인하여 2000년부터의 법정근로시간 단축 문제 역시 사회적 합의에 쉽게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금액의 감축을 수반하는 근로시간의 단축은 고용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리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근로시간위원회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언제부터 어느 단계에서 실시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 노동유연화와 관련하여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가장 큰 진통과정을 거친 것이 근로자파견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제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심은 현재도 잠복되어 있는 상태이고, 경영계 역시 그 허용범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근로자파견제는 우리나라 노동법이 상시고용근로자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법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비정규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노동법제의 새로운 입법태도라고 할 것이다. 이로서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비정규고용관계를 허용하고 이를 노동법의 보호대상으로 삼는 입법태도를 표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노동법의 규범적 측면 및 목적론적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이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언제든지 계약파기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염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노동계 역시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수인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대체적으로 그 입법 자체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현재와 같이 파견근로자의 대부분이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 하에서는 파

견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직력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용사업자의 전횡에 휩싸일 가능성이 특히 높다. 따라서 파견근로자 역시 근무하는 과정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 법령은 정리해고를 한 후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 제1항의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 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명백히 배치된다. 이 점에 관하여는 정리해고자에게 재취업할 것인지를 확인하여 이를 수락한 근로자에게는 정리해고 후 2년 내에 공석이 생긴 경우에 이를 통지하여 재취업의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즉 정리해고 후 2년 이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당해 업무에서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재취업을 포기한 때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⁷⁾

3. 노동기본권 관련 과제에 대한 검토

가.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협상 타결 후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은 노동계로 하여금 노사정위원회의 참여에 대한 회의를 품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개별 사업장에서는 회망퇴직제, 지명퇴직제라는 미명 하에 공공연하게 탈법적인 정리해고가 이루어졌으며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를 틈타 각종의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대응 역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극

적인 대응을 약속하는 정부측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성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실업자에 대한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의 인정 문제는 법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계 및 관료의 반대에 부딪쳐 주춤거리고 있었다.

나. 이러한 점에서 정부측이 올해 정기국회까지 사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위와 같은 노동계의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다만, 정부는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과정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하나 이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고 군인과 같은 특수직을 제외한 공무원에게는 전면적인 단결권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는 점 역시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것이다. 다만 지금과 같이 부당노동행위의 수사 및 기소 여부를 검찰측의 자의적 판단에 맡길 경우 또 다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대책위원회는 시급히 그 구성을 마친 후 현재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개별 사업장들에 대한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치고 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논의과제는 주로 근로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교섭력 향상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이것들이 화급한 쟁점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아직까지도 미약한 실정인 점에 비추어볼 때, 소규모 사업장의 미조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확보 및 적정 근로조건의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

요하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4. 결론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현재와 같은 열악한 경제상황에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청사진과 앞으로의 산업 발전에 부응하는 노동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것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설정에 부합하는 한국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그 어려움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은 우리나라가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 및 재벌개혁의 기간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돌발적인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노사정위원회가 원활한 운영과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소위 ‘국민의 정부’의 정치적 기반을 뒤흔드는 함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한국 사회의 발전단계를 한 차원 높이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것은 사회 전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만, 아담 스미스는 항상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의사당에서 떠드는 자본가의 미사여구에 혼혹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경고는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7) 강성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과제」, 『노동법률』 1998년 6월호, p.29.

5.18 관련 전두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

서울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1998. 6. 2. 판결선고	인
1998. 6. 2. 원본영수	

사건 95가합109826 손해배상(기)
원고 강두구 외 16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박성민, 송두환, 이석태, 조용환, 박연철,
안상운, 차지훈, 강행옥, 박재규, 이철환, 정웅태, 조운식,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영구, 김도형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기중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천
소송수행자 박진영, 조정철, 김성수
2. 안우만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5의 2 현대맨션 902호
3. 김도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3의 3 현대빌라 4동 1호
4. 최영광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내
5. 한부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 서울고등검찰청내
6. 장윤석
울산 남구 옥동 산 635의 3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내
변론종결 1998. 4. 21.

주문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1995. 7.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감 제1호증의 1 내지 4, 감 제3호증, 감 제4호증의
1, 2, 3, 감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원의 광주광역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
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 중 별지 제1목록 1, 3, 5, 7, 내지 15,
17 내지 23, 25 내지 32, 34 내지 44, 46, 47, 50 내
지 54, 56, 57, 59, 61 내지 64, 66 내지 70, 72,
75, 76, 78, 79, 81 내지 88, 92, 96, 97, 98, 101,
102, 104, 105, 106, 108, 110, 111, 112, 115,
116, 118 내지 137, 140, 141, 143 내지 150, 153,
155, 156, 157, 159 내지 165, 168항 기재 원고들
127명은 1980. 5. 일어난 소위 광주민주화운동(이하
5.18 사건이라 한다) 당시 피해를 입은 자들이고, 원
고들 중 별지 제1목록 2, 3, 6, 9, 13, 16, 18, 20,

24, 28, 33, 35, 36, 37, 42, 43, 45, 46, 49, 51 내
지 54, 57, 58, 60, 66, 67, 70, 73, 76, 78, 79, 80,

86, 90, 93, 94, 95, 98, 100, 101, 108, 109, 110,
114, 117, 120, 121, 124, 125, 128, 130, 137,

139, 140, 142, 150, 151 내지 154, 156, 160,
162, 164, 166, 167항 기재 원고들 68명은 1994.

5. 13. 서울지방검찰청에 이른바 5.18사건과 관련하
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소외 전두환 등을 별지 제3목
록 기재 죄명으로 고소·고발을 하였는데(서울지방
검찰청 1994년 형제47924, 47925호), 그 고소사실
의 요지는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다.

나. 위 고소·고발사건의 주임검사인 서울지방검
찰청 소속 피고 장윤석은 위 고소·고발사건을 5.18
사건과 관련한 다른 고소사건과 함께 수사한 후,
1995. 7. 18. 위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한 70건의
고소·고발사건의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이하 피고
소인 등이라 한다) 전원에 대하여 별지 제5목록 불기
소이유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
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 소외 김상희는
위 피고소인 등에 대한 위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재수사를 한 후, 1996. 1. 23. 및 같은 해 2. 7. 두 차
례에 걸쳐 5.18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피의사실에 관
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별지 제2목록 1 내지 4항
기재 소외인들을 포함한 11명을 서울지방법원에 공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방법원은 같은 해 8. 26.
소외 박준병의 공소사실 및 소외 황영시, 정호용의
내란목적살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12. 16. 1심 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만 그에 대한 선고형을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고심인 대법원은 1997. 4. 17. 사망한 소외 유학성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1995. 7. 18. 당시 피고 안우만은 법무부장관, 피고 김도언은 검찰총장, 피고 최영광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피고 한부환은 같은 검찰청 제1차장검사였고, 피고 장윤석은 같은 검찰청 공안 제1부장검사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사건의 주임검사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모든 범죄에 관하여 그 정상을 불문하고 언제나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강요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경직을 초래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잊게 되고 범원과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질자상의 부담을 주게 되어 소송경제에 반하며, 처벌할 필요가 없거나 처벌이 개선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하여 범죄자의 낙인을 찍게 하는 것은 형사정책상으로도 득책이 아니라는 반성 하에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사사법의 탄력성 있는 운용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공소제기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범죄인에게 조기개선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

아가 불필요한 공소제기를 억제하는 것이 소송경제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고려 하에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한 것인데,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재량을 행사함에는 그것이 자의에 의하여 행사되어서는 아니되고

입법의지, 목적, 성질과 헌법질서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5.18 사건의 주임검사인 피고 장윤석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고발된 피고소인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수사한 후 기소편의주의제도에 당연히 요구되는 재량권을 행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였는바, 피고 장윤석은 고소·고발된 일부 범죄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고, 수사 결과 피고소인 등의 내란, 군사반란 등 범죄혐의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법률 판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소인 등의 범죄행위가 이른바 통치행위이어서 사법심사가 배제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 장윤석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수사기관으로서 기소편의주의제도에 당연히 요구되는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않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고, 한편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삼권분립제도 및 사법부의 독립에 반하는 것이며, 고소인인 원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등을 침해한 위헌·위법한 처분이다.

라. 피고 장윤석의 위와 같은 위법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5.18 사건의 피해자로서 고소인인 원고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권, 형사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

권,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마. 이 사건 불기소처분 당시 피고 최영광 및 한부환은 피고 장윤석의 상사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결재를 하였고, 검찰총장인 피고 김도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결재를 하거나 지시 또는 상호협의를 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인 피고 안우만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면서 검찰청의 최고책임자인 피고 김도언을 통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결재 또는 지시하거나 적어도 방조하는 등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는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였다.

바. 그러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공무원인 위 피고들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과 관련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지급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우선 피고 장윤석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 장윤석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정당한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요컨대 피고소인 등이 새 정권 및 헌법질서를 형성하는 데 성공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와 같은 경우 법이론적으로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의 창출을 위한 행위들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또 사법기관이 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경우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으로 중대한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새 정권 출범 이후의 국민투표 또는 대통령선거 등을 통한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사법적으로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 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자, 법 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오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소인 등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 등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소인 등이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소인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견해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소인 등에 대하여 처벌하였는데도 그 후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으로 아무런 혼란이 야기되지 않은 점만을 고려하여도 피고소인 등의 범죄행위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경우 위와 같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부당

하고, 또 피고소인 등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장윤석이 피고소인 등에 대한 피의사실에 관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법리오해 등에 기인한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위법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관하여 살펴다.

이 사건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로서는 피의사실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그 수집된 증거에 관한 평가를 하고 법률적 판단을 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모든 국민의 법 앞에서의 평등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범죄 피해 국민의 구조청구권 등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저해되지 아니하고 불편부당한 공소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막바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그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인 등이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다음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소의 전두환이 대통령에 선출되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행하였고 다시 그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고 그 개정된 헌법(현행 헌법)에 따라 소의 노태우가 대통령에 선출되어 그 임기를 마치는 등 그 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마치 피고소인 등이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하였고 나아가 피고소인 등의 기왕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보일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위 대법원 판결 참조, 물론 이와 같이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정치적 변혁이 성

공하여 새 질서가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면 무너진 구 헌법질서에 근거하여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의 창출을 위한 행위들의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거나 내란이 성공하여 기존의 법질서가 파괴되면 내란죄에 관한 형법 규정의 적용문제는 생겨나지 않는다는 국내·외 형법학자들의 견해가 있는 점(위와 같은 견해가 타당한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그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6. 2.

재판장 판사 민경도
판사 최성배
판사 이상철

천리마사건 항소이유서

사 건 97노147호 국가보안법위반등
피고인 김대성, 권영준
위 피고인(항소인)의 변호인
변호사 윤영근, 김칠준, 김동균, 노정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개진합니다.

다음

1. 피고인의 신적사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 김대성

피고인은 3남3녀 중 막내로서 부친이 오랫동안 농 협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1993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홀어머니만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992. 3. 경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 자원학과에 입학하여 현재 위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피고인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는 입시준비에만 열중한 평범한 고등학생이었고 다만 피고인은 농촌에서 태어나 농민들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겠다는 소박한 마음에서 서울농대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나. 피고인 권영준

피고인은 1990. 2. 경 서울 한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음해인 1991. 3. 경 경기대 식품가공학과 입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하였고 노래를 잘하는 편이어서 중학교때에는 교회에서 성가대로 활동하였고 고등학교때에도 학교 합창단원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2. 피고인(항소인)들이 천리마 노래패에서 활동하게 된 경우

가. 피고인 김대성

피고인은 1995. 7. 경 서울농대 수원캠퍼스에서 메김소리라는 노래패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단원 중의 한 사람으로부터 수원지역 대학의 연합노래패인 천리마노래단에서 함께 활동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천리마가 노래운동으로 서의 전문성을 지향하고 있는데다가 각 대학 연합노래패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후 노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쯤 거쳐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나. 피고인 권영준

피고인이 복학하였을 때 같은 학교에 다니던 김남균이 먼저 제대 후 복학해서 천리마 노래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친구의 권유에 의해 천리마 노래단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1996. 9. 천리마 노래단의 공연 사무장을 맡게 되었는데 사무장이 하는 일은 주로 외부로부터 공연을 요청받았을 때 스케줄을 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장이 되자마자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장으로서 일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3.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이적단체인 천리마구성

가. 본래 각 대학 노래패들은 종종 여러 대학교가 함께 하는 행사에서 연합하여 공연에 참여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4. 경기남부청련 출범식때 천리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지역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노래패가 구성이 되어 위 출범식에서 공연을 하였고 1995년 출범식에도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크리스마스 때 각 교회 성가대들이 연합하여 연합성가대를 구성하는 것과 같이 각 대학 노래패들의 한시적인 연합노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그러다가 행사때마다 즉흥적으로 모여서 노래를 연습하는 것보다 상설적인 조직체로 만들어서 노래를 익히고 공연을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이러한 한시적인 연합노래패는 상설적인 연합노래패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다. 상설적인 각 대학 노래패는 그 후 활동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경기남부총련 산하 노래패가 아

니라서 홍보나 활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되었기 때문에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전체 학생들에 대한 지명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경기남부총련의 인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 각 대학 연합노래패인 천리마 노래패가 경기남부총련의 인준을 받기 전까지는 특별히 조직의 강령이나 좌표라는 것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경기남부총련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강령이나 좌표가 만들어져야 그것을 토대로 심사도 하고 인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게 되었고 그 내용도 학생운동단체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일 뿐이지 특별한 내용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노래패의 역할로서 노래로서의 역할, 총련 강화의 역할, 자주문예의 역할, 특별기구로서의 역할이 설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경기남부총련의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한 역할이었을 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 또한 천리마노래패가 인준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어떠한 활동의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르는 노래가 특별히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 이상과 같은 경위에 비추어볼 때 천리마노래패가 이적단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도 적을 이름으로 천리마노래패를 구성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적단체 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당연히 무죄입니다.

4.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은 천리마노래패가 공식적으로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천리마로 나타낼 수 있는 노래테이

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과 학생들에게 민중가요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생각에서 노래테이프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에 수록된 〈반미출정가〉, 〈통일조국의 새아침〉 등이 북한의 노래인 것은 사실이나 북한방송을 청취해서 딴 것은 아니고 다른 학생들에 의해서 불리워진 노래이고 그래서 북한 노래의 원가사와 곡은 모르고 있습니다.

나. 또한 〈일심단결〉은 북한 노래의 가사를 바꾸어 편곡을 하였지만 북한의 노래가사 중 당, 당중앙, 주체라는 말들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정서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바꾸어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이 적을 이름으로 테이프를 제작, 판매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범죄 사실도 당연히 무죄입니다.

5.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 - 이적고무 찬양에 대하여

가. 그 동안 주로 각 대학교 축제때 행사의 일환으로 노래패 초청 공연이 있는데 피고인들은 천리마가 경기남부총련의 공식기구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피고인들은 주로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많이 불리고 있는 노래를 선별하여 불렀는데 그 대표적인 노래가 〈청년의 양심이 조국을 지킨다〉, 〈밤〉, 〈장마비처럼〉, 〈민족대학가〉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축제에 초청되어가서 〈청춘〉이라는 노래를 제외하고 다른 북한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은 적을 고무 찬양할 의도로

공연을 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범죄 사실도 당연히 무죄입니다.

이상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서 무죄일 뿐만 아니라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원심 판결의 형량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997. 2.

위 피고인(항소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 변호사 김칠준

서울고등법원 형사고등 5부 귀중

천리마사건 국가보안법 무죄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결

1998. 5. 14. 판결선고	인
1998. 5. 14. 원본영수	

사건	97노147 가. 국가보안법위반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 김대성, 학생 2. 가. 조은경, 무직 3. 가.나. 권영준, 학생 4. 가. 이경호, 학생 5. 가. 강순미, 회사원 6. 가. 한선희, 학생
항소인	피고인 김대성, 권영준 및 검사
검사	옥준원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동균(피고인 김대성, 권영준을 위하여) 변호사 나선수(피고인 조은경, 이경호, 강순미, 한선희를 위한 각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6. 12. 6. 선고 96고합729, 96고합730(병합), 96고합731(병합), 96고합732(병합), 96고합733(병합), 96고합734(병합) 판결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김대성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권영준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원심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씩을 피고인
김대성, 권영준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김대성에 대하여
는 2년간, 피고인 권영준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조은경, 이경호, 강순미, 한선희에 대한 형
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입수된 천리마 1집 원본테이프 1개(증제12호)를
피고인 김대성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대성, 권영준에 대
한 이적단체 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
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의 행위에 별다른 위험성이 없음에 비추
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1) 사실오인(피고인 조은경, 이경호, 강순미, 한 선희에 대한 무죄부분)

위 피고인들은 원심판시 천리마 결성 전에 의식화
학습 등을 통하여 천리마의 성격과 방향 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공소의 강상구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실무작업만으로 강령 등을 문서화한
것이며 피고인들은 위 강상구 등이 작성한 강령의 초
안을 보고 이에 모두 동조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피
고인들은 위 천리마가 이적단체라는 정을 알고 초안
에 동의한 것이므로 이적단체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천
리마가 이적단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
로 판단하였으므로 판단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유탈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1996. 1.부터 2. 중순
사이의 노래테이프 판매로 인한 이적표현물의 제작,
반포의 점, 1996. 2.부터 3. 사이의 가요공연으로 인
한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의 찬양, 공조의 점, 피고인
김대성, 한선희의 1995. 4.경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명의의 문건이 수록된 디스켓 소지로
인한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피고인 조은경, 권영준,

강순미의 1996. 2. 말경 '공산주의적 대중운동의 전형적인 형태'라는 제목의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

(3) 물수의 법리오해

원심은 압수된 물품 중 노래테이프 1개(증 제11호)만을 물수하고 나머지 압수물에 대하여는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형법상 물수 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4)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공개리에 공연활동을 하여 이적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판단유탈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판단유탈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각 행위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건들이 모두 병합된 이후인 원심의 제2차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들의 1996. 3. 경 천리마 구성 전의 사실들은 경과사실로서 별개로 기소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석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사실들은 경과사실로서 기소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검사의 물수의 법리오해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물수형은 필요적인 것 이 아니라 임의적인 것으로서 법원으로서는 물수 대상이 된다고 하여 반드시 물수를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물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 검사의 피고인 조은경, 이경호, 강순미, 한선희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제작한 테이프나 공연 내용 중에 일부 이적성을 띠고 있는 가요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학생 또는 이제는 학업을 마친 사회인들로서 철저한 사상성으로 무장되어 있다기보다는 음악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 운동권 가요나 일부 이적성 있는 가요에 접하게 되어 이 사건에까지 이른 점,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음을 자각하고 이제는 성실한 사회인 또는 학생으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고, 직권으로 살피면 오히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과기하기로 한다.

라. 피고인 김대성, 권영준의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및 이적 친양, 고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들이 제작한 테이프에 수록된 '반미출정가 3'은 북한가요를 일부 개사 내지 편곡한 것으로서 그 가사는 '저주로운 원수의 포성 저산너머 울려 와도 우리는 평화를 지켜 검은 구름 가시어왔네 조선의 존엄을 그 누가 건드릴소냐 침략에 날뛰는 한 이

땅에서 쓸어버리리. 성스런 이 강산에 원수 미제 불지르면 서릿발 충장을 안고 경전장에 달려나가리 우리의 가슴속에 피맺힌 원한 그 얼마더냐 침략에 날뛰는 한 이 땅에서 쓸어버리리'로 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공연한 '혁명동지가'의 가사는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던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 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그들에게 비기 라만은 뜨거울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물 아치는 미제에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 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으로 되어 있고, '청년의 앙심이 조국을 지킨다'는 '미제의 발톱에 생명 불 끊기며 전쟁의 포성이 반도를 혼든다 자주와 예속의 갈림길에 서서 불타는 청년의 심장을 아는가 너와 나 애국의 큰길에서 가는 우리의 청춘은 당당하여라 조국은 목놓아 우리를 부른다 청년의 피맺힌 투쟁을 부른다 이보다 숭고한 부름이 있으랴 조국에 바친 생명원하리라'로 되어 있어 이들 가요는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부합하는 폭력혁명을 미화하는 내용으로서 북한의 활동을 친양, 고무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마. 피고인 김대성, 권영준 및 검사의 이적단체 구성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적단체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소 외 강상구, 지정환과 공모하여,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침침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 있는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으므로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하여는 소위 민족해방인

민민주주의혁명이론에 따라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파쇼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 방편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공산혁명의식을 고취하고 북한정권 및 당정책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1996. 3. 경 수원시 소재 천리마 사무실과 수원시 이의동 소재 공소 외 김웅의 자취방에서 모여 "천리마"의 향후 활동방향과 위상을 논의하면서 위 강상구가 "개량화, 반동화되어가는 남한 노래단체들이 하나님 생겨나고 있을 때 자주문예대오를 김영삼 정권의 반동적 이데올로기 공세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남한 변혁운동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문예창작활동을 통해 반미, 조국통일투쟁대오의 최선두에서 승리의 나팔을 울려야 한다는 것이 천리마의 변할 수 없는 원칙이며 민족해방운동전선에서 청년학생의 주력군적인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김대성은 "공감한다. 올바른 변혁적 판점에서 문예노선은 민족의 과제를 풀어헤치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 문예노선은 반미를 뛰어넘어 미제와의 한판 격돌을 예비하는 항미로, 그리고 조국통일투쟁 실현의 미래를 여는 내용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위 지정환이 "우리 천리마의 사명은 기존의 문예단체와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고, 피고인 권영준은 "올해의 중심적인 과제인 김영삼정권 타도투쟁을 본격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토의를 거쳐 천리마 강령·노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작업을 하여, 1996. 3. 19. 안산시 소재 한양대학교 학생회관 옆 강의실에서 개최된 제4기 경기남부총련 대의원대회에 피고인 등이 참석하여 경기남부총련의장 안재범과 참석대위원들에게 "『노래단의 위상』

가. 지위

8만 학우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 받아 안아 남부총련 … 자주문예 전설에 복무하는 전문노래조직

으로써 경기남부총련 체계 내 특별기구이다.

나. 역할

- 노래단의 역할

경기남부총련 8만 학우들이 질높은 문예적 이해와 요구를 예술적으로 승화, 전문적 문예활동을 … 청년 학생 노래운동의 정형을 창출하여 남부총련 노래일꾼들의 바른 진로를 모색하는 사상의 전파로서의 역할을 한다.

- 총련 강화의 역할

문예를 무기로 8만 청년들에게 경기남부총련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함으로써 근거지를 사수하고 남부총련으로의 집중단결을 이룩하는 정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 자주문예건설

우리식의 문예노선의 정형을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 건설 및 운용의 정형을 창출한다.

- 특별기구로서의 역할

정치일꾼의 자격으로 단위 노래패에 대한 예술적 내용적 지도를 통하여 단위 노래패를 강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남한문예운동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로서 노래단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좌표는

민족자주문예노선을 기반으로 한 자주문예실현을 총적 좌표로 하여 항미의 유력한 고지를 접하고 전민족 최대의 과업인 조국통일을 주동적으로 준비하여 8만 청춘에게 혁명승리의 신심을 불러일으키자.

과제는

- 대중관을 올바로 하자

- 남부문예운동의 기풍을 창조하자

- 문예지도 핵심을 튼튼히 발굴 육성하자

- 8만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문예 내용과 형식을 창조해내자

- 항미조국통일투쟁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해낸 작품을 발굴 창작 보급하자

- 민족민주전선체 강화에 주동적으로 참여하자

실현방도는

- 민중 중심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다

- 예술적 역량 축적에 힘쓴다

- 각 단위의 학교 노래패에 대한 사상적 지도사업을 정예화한다

- 범청학련, 범민련 강회를 위해 범민련 문예위에 상시적으로 결합한다.

다. 강령

8만 경기남부총련 강화와 자주문예운동의 최선봉에서 조국통일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 큰 뜻을 펼치려는 경기남부총련의 노래단 천리마는 언제나 8만 학우대중들과 한몸이라는 혼연일체의 기운으로 투쟁하고 학습하고 노래할 것이며 조국이 준 아름다운 생명을 이따에 미제가 완전히 물러나고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할 것을 밤하늘에 빛나는 찬연한 한별 아래서 8만 학우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 안으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다짐한다.

1. 미국을 반대하고 목숨보다 소중한 조국의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의 대오에 언제나 동참하며 한총련 강화와 경인총련, 경기남부총련 강화에 힘껏 복무한다.

1. 민족자주사상을 근간으로 민족자주문예노선 확립에 총력을 기울인다.

1. 학원 내 제국주의문화를 반대하고 올바른 문화기풍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1. 타지역 노래단이나 사회노래단체들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굳게 연대하여나간다.

1. 학우대중들의 삶과 언제나 함께하며 학우대중들에게 뿌리박는 노래단이 되도록 노력한다.

1. 경기남부총련 정서에 맞는 창작물을 많이 발굴, 창작, 보급한다”는 내용으로 된 “경기남부총련 노래단 천리마 인준안”을 배포하고, 이어서 위 강상구가

위 인준안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참석대의원들이 박수로 동의함으로써 “경기남부총련노래단 천리마”를 인준받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문예활동을 빙자한 공연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왜곡하여 저항의식을 부추기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친양·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 것이다라고 힘에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김대성, 권영준에 대하여는 위 천리마 노래단을 이적단체로 보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위 피고인 등은 노래에 관심과 소질이 있어 각 소속대학에서 노래서클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95. 경 위 천리마에 각자 다양한 계기로 가입한 사실, 1995. 12. 경 수원시 원천유원지에서 강상구를 단장으로 하고 가창팀, 반주팀, 음향팀, 기획팀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정식으로 출범한 사실, 1996. 2. 초순부터 3. 초순에 걸쳐 경기대, 한양대, 중앙대, 서울농대, 수원여전, 협성대에서 개최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대학가에서 널리 불려지고 있는 ‘민중가요’를 공연한 사실, 신입생들이 쉽게 위 민중가요를 접할 수 있고, 노래단으로서의 천리마를 널리 인식시키고, 학생대중의 경기남부총학생회연합으로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른바 ‘새터’ 테이프를 제작한 사실, 천리마의 위상에 대한 토론에서 위 피고인 등은 “노래단 천리마가 북한의 소위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뜻을 담고 있다면 공연을 보는 경기남부지역 학생들이 심한 거부감을 갖지 않겠는가,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우리 노래단의 이름이 위 천리마운동을 연상시킨다면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자 위 강상구 등이 천리마가 활동을 한 1993. 이래로 위 명칭을 사용하여왔고 새터테이프도 천리

마의 이름을 사용하였으므로 계속 사용하자고 한 사실, 따라서 위 피고인 등은 더 이상 천리마의 성격과 활동방향 등에 대하여 심도깊은 토론은 전개하지 않은 채 당장 현안문제의 해결 – 천리마의 대중적인 지명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남부총련의 인준을 받아 공식적인 노래단으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강령을 갖추는 일이 요구되었음 –을 위해 그 당시 단장을 맡고 있던 강상구와 기획을 맡고 있던 김대성, 권영준, 지정환 등이 중심이 되어 2차에 걸쳐 토론을 거쳐 천리마를 ‘개량화되어가는 다른 노래단체와는 달리 남한 혁혁운동의 최선두에 서서 반미·반파쇼의 주력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로 위치지위 기준의 천리마의 성격과는 달리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선전하고 이에 동조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위치지운 사실, 그러나 위 강상구 등은 위와 같은 토론과정에서 수렴된 천리마의 위 역할 등을 사실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위와 같은 토론내용을 우회적으로 규정한 노래단의 지위와 역할, 좌표, 조직체계 등이 기재된 A4용지 1장 분량의 초안만을 위 피고인 등에게 배포하고 간략한 설명을 부가하자 위 피고인 등이 이에 동의한 사실, 위 초안에는 강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 강상구 등이 추후 강령을 추가로 작성하여 경기남부총련의 인준을 받기로 한 사실, 그 후 강상구 등이 강령 등을 추가로 작성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여 종래부터 존재해오던 노래모임인 위 천리마가 위 강상구와 김대성, 권영준, 지정환에 의하여 2회에 걸쳐 천리마의 성격과 활동방향에 대하여 심도깊은 토론이 있고 나서 이에 다른 천리마의 위상과 역할, 강령 등이 새로이 규정되거나 비로소 이적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 것으로 보고, 위 피고인 등은 위 초안 구성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사전에 체계적인 사상학습과 깊은 토론과정을 통하여 변모된 위 천리마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한 폭넓

은 이해와 공감 없이 위 강상구 등이 작성하여온 초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 피고인 등이 이른바 '이적단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찬양·고무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초안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먼저 국가보안법상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리 그 특성상 조직이 비밀스럽고 대내외적으로 명확한 실체를 가지지 않고 실제 그 파악도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되 그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목적 달성을 필요로 하는 최소한 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이적단체라는 그 결사목적의 특수성,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침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도한 이적목적 외에도 위 단체가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이고도 실질적인 결합체라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조직이 이적단체를 이루기 위하여는 ① 단체성 ② 이적성의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과연 위 천리마가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단체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원심 및 당시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천리마의 인준시 조직체계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총회를 두고 그 밑에 위 강상구를 단장으로 하며 분야별로 기획, 가창, 반주, 음향의 4팀을 두는 체제였던 사실, 위 강상구는 연배가 높고 가창·작곡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단장으로 추대된 사실, 가입의 경우 음악에 재질이 있으면 하면 별다른 가입절차 없이 단원들과 인사하는 정도로 구성원이 될 수 있던 사실. 탈퇴도 자유로워 구성원은 수시로 변동이 있으나 대개 10 내지 15명 선이었던 사실,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가명을 사용하고 호출기를 통한 암호로 연락하기는 하였으나 그 활동은 운동권가요 및 개사한 북한가요의 공연 및 테이프제작 등 공개적인 부분을 위주로 하여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조직 및 활동체계라면 구성원도 소수일 뿐 아니라 위에서 본 팀별 구성이라는 것도 공연을 위한 역할 분담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결국 대표자가 존재하는 이외에는 조직으로서 이적목적 수행을 위한 별다른 체계를 갖추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별 다른 지휘통솔체계가 보이지도 아니하며, 그 활동에 있어서도 이적단체로서의 특징인 밀행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은 피고인들 스스로 작성한 유인물에서 공식적인 조직체계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새로운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있던 점에서도 알 수 있다(수원지방검찰청 96년형제77447호 수사기록 제1982면 등 참조). 따라서, 위 천리마가 이적단체로서 요구되는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이고도 실질적인 결합체라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이적성에 관하여 본다. 무릇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

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로서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적성의 판단은 이러한 엄격한 해석 하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한편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그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극도의 신중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 바,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어느 집단의 행위 중에 일부 이적성을 띤 행위가 있다고 하여 그 집단 전부를 바로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집단이 제작한 표현물 중에 일부가 이적성을 띤다고 하여 그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이 될지언정 그 집단이 바로 이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혁명을 찬양하고 미제국주의의 배척을 주장하는 과격한 표현물이라고 하여 그것이 바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비록 북한공산집단이 문예를 통한 혁명사상 고취를 강조한다고 하여 문예활동에 있어서 표현물에 나타난 이적성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피고인들의 활동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제작한 테이프나 공연한 가요 중에 일부 이적성을 띠고 있는 가요들이 있음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 외에는 이적성 있는 가요들이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비록 운동권가요 및 북한가요(일부 표현이 과격하거나 자신들 정서에 맞지 않 는 부분은 개사하였다)를 부르고 그 중에 내용이 과격하여 혁명을 부추기거나 미국을 배척하는 부분 등 이적성이 있는 가사들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성숙도, 학생운동의 방향,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점차의 변천, 공산권의 몰락 등 세계정세의 변화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의 활동 전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검사가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이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동조하였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지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주장이 피고인들이 공연하거나 반포한 노래가사 중에 극히 일부의 항미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발견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이 다른 이적단체들처럼 대한민국을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한다거나 혁명의 구현방식으로 전민항쟁을 주창한다거나 자본주의 이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북한을 사회주의 승리의 표상,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의 구현자 등으로 찬양하고 있다거나 하는 점도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 김대성, 권영준 등이 천리마를 '남한 혁명운동의 최선두에 서서 반미·반파쇼의 주력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로 위치지웠음을 전제로 천리마를 이적단체로 규정하였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천리마는 1994.경 수원지역 대학들의 연합노래페로 구성되어 사실상 경기남부총련 소속 노래단으로서 학생집회에 참가하여 운동권가요, 북한가요 등을 공연하는 등으로 상설적으로 활동하여오던 사실, 위 강상구 등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인준안을 작성하여 경기남부총련의 인준을 받기 이른 사실, 그 인준을 전후하여 천리마의 활동이나 실제 조직에는 별다른 변화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더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천리마를 새로이 반미·반파쇼의 주력군이라고 규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물론 위 강상구 등이 작성한 인준 안에 항미, 혁명승리, 민족민주전선체 등의 과격한 용어들이 일부 보이기는 하고 그것이 북한의 자주·민주·통일노선, 자주사상, 문화체국주의 척결론, 반미자주화투쟁, 남한혁명역량 편성 등과 전혀 상통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 천리마가 바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이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천리마가 소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 등을 기도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다만 전체적으로 문예활동을 통한 사회변혁운동에의 기여 내지 경기남부총련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의 모임 정도로 보여질 뿐이다(피고인 김대성 등이 위 강령상의 '한별'이 김일성을 의미한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과연 그러한 해석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위 천리마는 그 상위조직인 경기남부총련, 나아가 경기남부총련이 소속된 경인총련, 한총련의 강화를 위한 조직일 뿐 따로이 독자적인 혁명노선을 가지고 있고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구성된 별개의 이적단체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천리마는 이적단체로서 갖추어야 할 단체성과 이적성을 충분히 구비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그 중 피고인 조은경, 이경호, 강순미, 한선희에 대한 부분은 무죄 이유를 당심과 달리하기는 하였으나 결론에 있어 동일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김대성, 권영준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고, 피고인 김대성, 권영준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폐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 사실 중 원심판시 제1항을 제외하는 외에는 원심 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찬양·동조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피고인 김대성, 권영준의 집회 참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김대성, 권영준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이경호, 조은경, 강순미, 한선희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들에게 대하여)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김대성, 권영준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이경호, 조은경, 강순미, 한선희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조은경에 대하여는 65일을, 피고인 이경호, 강순미, 한선희에 대하여는 60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상이 있고, 개전의 정이 현저 하므로)

1. 몰수(피고인 김대성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김대성, 권영준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적단체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5. 14.

재판장 판사 우의형
판사 안영길
판사 김용석

사업 및 업무보고 (98년 4월 25일~6월 25일)

I. 모임 현황보고(98년 6월 26일 현재)

회원 현황 : 본부 207명
부산·경남지부 28명,
대전·충청지부 12명
총 247명

II. 업무 및 활동보고

1. 사무국

가. 사무국 업무보고

- (1) 민변 창립10주년 기념행사 (심포지엄, 리셉션) / 5. 29.(금) 14시 - 20시, 프레스센타
(2) 제11차 정기총회 / 98. 5. 29.(금) ~5. 30.(토), 천마산 롯지호텔

2. 상임위원회

가. 기획위원회 / 위원장 박수근, 간사 김한수

나. 회원위원회 / 위원장 강금실, 간사 김도형

- (1) 전주 황인택 회원 탈회 요청 / 6. 2.
(2) 김용준·양철웅 회원, 가입 유보 요청 / 6. 24.

다. 출판·홍보위원회 / 위원장 이백수

(1) 회의: 5. 26.(화) 12시 민변사무실

① 제11차년도 출판위원회 사업계획안 검토

▷ 「법과 사회」와의 통합문제는 실질적인 내용을 채울만한 역량이 현재 민변으로서는 부족하므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의 내용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 특집을 프로젝트 형식으로 6개월 정도분을 미

리 정하고, 필자에게(회원포함) 자료비와 원고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 회원 중심으로 인권핸드북의 필진을 구성하여, 행정 부분을 시작으로 인권관련 법률지식을 약 2쪽 정도로 연재하자는 의견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의 연재물 내용을 충실히 하여 이를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사업을 전개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음.

▷ 각 위원회별 단행본 출판시에는 출판위원회 위원 1인이 반드시 초기 논의부터 참여하여 편집의 원칙과 통일성 등을 담보해내기로 하다.

▷ 새 회기를 맞이하여 탈회를 원하는 위원들을 정리하고, 신입위원을 영입하기로 하다. 일단 최은순 회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기로 하다.

▷ 실무간사의 업무가 과중하고 단순 편집작업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기존의 월간지 빌간의 편집을 매월 20~30만원선에서 외주를 주는 것을 알아보기로 하다. 기타 단행본 출판시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컴퓨터 편집은 외주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키로 하다.

②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6월호 기획안 : 6월호부터 연재하기로 한 '그때 그 사건' (또는 '민변 야사')의 인터뷰팀을 구성하고, 이번에 발간된 백서 내용을 토대로 취재하여 글을 연재하기로 하다. 인터뷰팀 구성은 이백수 위원장이 담당하기로 하다.

라. 국제연대위원회 / 위원장 한택근, 간사 김병주

(1)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집행위 회의보고 / 5. 7.(목) 12시, 천주교인권위원회

① 재정보고

- 간사단체가 민변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측로 이관됨.

- 현재 인권협 회비 총 잔액이 7,924,492원

② 교도소 사망사건 자료 보고

- 사랑방 박래군 사무국장이 작성한 교도소 사망사건 자료를 회람하고, 이 자료의 활용 방법과 관련하여 잠정적으로 5월 20일 오전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낸 후 인권협 집행위원이 법무부 교정국장을 만나 철저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로 하다.

③ 광주 <아시아 인권현장 선언대회> 관련 보고

- 아시아 인권현장 선언 내용 중 일부 문구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사실확인후 인권협의 위임으로 민변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결정함.

④ <국민인권기구 관련 워크샵> 준비 보고

- 민가협의 남규선 총무가 제출한 워크샵 기획안을 수용하고, 한편으로 광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인권현장 선언대회> 참가자 중 이 워크샵에 참여할 수 있는 인사가 있을 경우, 일정 그대로 진행하되 만약 참가가 불가능하면 발제자들의 의견을 들어 워크샵 일정을 조정하기로 하다.

⑤ 기타

- 인권운동사랑방이 그동안 주관하여온 <인권영화제>를 인권협이 주최단체 중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랑방의 제안이 있었으며 이에 참여 방식에 대해 논의한 후 다시 한번 제안하기로 하다.

(2) 인권협 6월 집행위 회의 결과: 6. 9.(화) 12시 천주교 인권위원회

① <국가인권위원회 워크샵> 보고

- 6. 2.(화) 민변에서 진행된 국가인권기구 관련 내부 워크샵을 민변의 김은영 간사가 보고

- 5월 인권협 집행위 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는 <인권협이 만드는 인권워크샵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어떻게 만들것인가?'>를 23.(화) 종로성당에서 개최하고 이 구체적 내용을 민가협에서

각 단체에 발송하기로 하다.

② 회의 안건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결정 건

- 민가협이 이번 주에 결정하여 간사단체에 연락하기로 하다.

▷ <제3회 인권영화제> 인권협 주최 건

- 제3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하여 기준의 주최단체였던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로 하지 않고 인권협이 주최단체로, 주관은 인권운동사랑방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집행위는 인권운동사랑방이 제안 공문을 각 단체에 발송하고 이를 다음 집행위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다.

▷ <제3차 아시아 인권대회> 인권협 주최 건

- 개최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으나, 많은 부담이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다. 특히 국제연대 역량이 있는 단체간의 긴밀한 논의를 거치기로 하다.

▷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 인권협 주최 건

- FD에서 최근 국가보안법 캠페인과 관련하여 2만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옴에 따라 이 지원금을 인권협 명의로 수령하고, 앞으로의 사업을 인권협이 주최하되 그 동안 중심적으로 활동해왔던 민변, 민가협, 사랑방 3개 단체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다. 더불어 타 단체들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함으로 관련 자료를 각 체에 발송하기로 하다.

(3) 회의보고: 6. 17.(수) 12시 민변사무실

① 국제엠네스티 한국담당자 방한의 건

- 6. 22.(월) 김제완, 김선수, 조광희 회원과 면담약속됨.

- 그외 최근의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진보적인 판결문을 영역해주기로 함.

- 알제리, 이란 난민신청자들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변정수 변호사와 면담 약속 잡아줌.
- ② 국가인권기구 관련 건
 -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인권협 주최 워크샵(6. 23. 기독교백주년기념관 4층 소회의실)에서 차지훈 위원이 국가인권기구의 임무, 권한, 구성 등에 대해 발제하기로 하다.
 - ③ 인권협 회의 보고 (생략)
 - ④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반박보고서 작성의 건
 - 1 · 2차 정부보고서 및 반박보고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기로 함. 미리 공부하거나 검토할 내용과 분량은 한택근 위원장이 모임 일정과 함께 알려주기로 하다.

마. 사법위원회 / 위원장 유종원, 간사 천낙봉

3. 상설특별위원회

가. 노동위원회 / 위원장 이경우, 총무 김도형

- (1) 회의: 4. 29.(수) 12시 호화반점
 - ①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시리즈 발간 관련
 - : 근로기준법 - 70% 가격 출고요청 서점은 다른 서점과의 협평 고려하여 판매 안하기로 하다.
 - ② 제11차년도 사업계획안 및 각 부 운영 · 인선 등 논의
 - ▷ 제11차년도 사업계획안
 -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시리즈 Ⅲ, Ⅳ 발간을 9월경부터 추진하기로 하다.
 - Ⅲ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험 성격의 법률
 - Ⅳ - 과연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 직업안정법 등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
 - 「노동법 사전」 발간은 보류하고 좀 더 생각한 후 결정하기로 하다.
 - ▷ 각부 운영 및 인선 등 논의
 - 연구사업부: 김선수 부장(판례모니터링 담당 김우진 위원), 자료조사부: 도재형 부장, 대외협력부: 정태상 부장(해외담당 차지훈 위원)
 - ③ 공무원 소급 임용취소에 대한 의견 검토(조상희 위원이 검토 의견 정리)
 - ▷ 당연퇴직무효확인청구나 퇴직금여부지급처분 취소청구
 - 현재 대법원판결이 계속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 현재로서는 신분 회복을 위한 다른 청구원인을 찾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의 개념을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개념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후 헌법소원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성공 가능성 낮음.
 - ▷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 형실효제도의 취지상 실효된 전파는 경찰청의 범죄경력에 대한 컴퓨터 조회상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정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제공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청구원인으로 퇴직금 및 위자료 청구
 - ▷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청구
 -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청구. 다만, 단순노무직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에도 판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특별입법을 통한 정치적 구제를 기다리기 어려우므로 적극적으로 소송 등을 통하여 정치적 해결을 압박하는 한편, 안 될 경우 최후적으로 소송을 통한 해결도 추진하기로 하다.
 - ④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민중생존권 확보 등과 관련한 범국민대책위 구성논의를 위한 집행책임

- 후 결정하기로 하다.
- ▷ 각부 운영 및 인선 등 논의
 - 연구사업부: 김선수 부장(판례모니터링 담당 김우진 위원), 자료조사부: 도재형 부장, 대외협력부: 정태상 부장(해외담당 차지훈 위원)
- ③ 공무원 소급 임용취소에 대한 의견 검토(조상희 위원이 검토 의견 정리)
 - ▷ 당연퇴직무효확인청구나 퇴직금여부지급처분 취소청구
 - 현재 대법원판결이 계속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 현재로서는 신분 회복을 위한 다른 청구원인을 찾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의 개념을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개념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후 헌법소원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성공 가능성 낮음.
 - ▷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 형실효제도의 취지상 실효된 전파는 경찰청의 범죄경력에 대한 컴퓨터 조회상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정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제공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청구원인으로 퇴직금 및 위자료 청구
 - ▷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청구
 -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청구. 다만, 단순노무직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에도 판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특별입법을 통한 정치적 구제를 기다리기 어려우므로 적극적으로 소송 등을 통하여 정치적 해결을 압박하는 한편, 안 될 경우 최후적으로 소송을 통한 해결도 추진하기로 하다.
 - ④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민중생존권 확보 등과 관련한 범국민대책위 구성논의를 위한 집행책임

자 회의

- 김도형 위원이 참석내용을 보고하다.
- 민변에서는 노동위, 사회복지위가 관여하기로 하다.
- 노동위에서는 김도형 총무와 류호식 간사가 참여하기로 하다.
- (2) 회의: 5. 6.(수) 12시 호화반점
 - ①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시리즈 상황
 - 근로기준법이 현재 900여권 소진되었으며, 입금된 판매수익금은 180여만원임.
 - ② 공무원 소급 임용취소에 대한 소송의견 검토
 - 국민회의에서 현재 대책 마련중이나, 퇴직금 보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대책위원회와 연락하여 공무원 지위 회복을 위해 소송 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파악하여 노동위원회 기획소송으로 진행 검토 - 조상희, 도재형 위원 담당
 - ③ 고용 · 실업대책과 재벌개혁,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 집행책임자 회의 참석 보고 / 김도형 위원
 - 명칭확정 (고용 · 실업대책과 재벌개혁,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④ 제11차년도 노동위원회 예산안 검토
 - 제출안대로 확정하다.
- (3) 회의: 5. 13.(수) 12시 서라벌
 - ①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시리즈 상황 점검
 - 현재 약 1천여 권 소진 200여만원 입금
 - 무료배포 350여 권(회원, 필자, 도서관, 노동단체 등)
 - 서점배포 약 200여 권, 회원사무실 등 약 270여 권, 우편판매 약 130여 권
 - ② 공무원 소급임용취소에 대한 소송의견 검토
 - 공무원 지위회복을 위해 소송 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책위에서 소송필요시 민변에 연락하기로 하다(담당 김진국 위원).
 - ③ 민변 제11차년도 노동위원회 예산안 검토
 - 제출안대로 확정하다.
 - ④ 신입회원 가입 추진상황 검토
 - 가입 확정: 법무법인 한결 하승수 회원
 - 확인 못한 신입회원은 오늘 중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류호식 간사에게 통보하기로 하다.
 - ⑤ 금속연맹, 조정신청에 대한 법적 문의 대응 건
 - 금속연맹이 문의한 중노위 조정신청 반려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이인호 회원이 현재의 상황을 금속연맹에 알아본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다.
 - ⑥ 각 사업부별 사업계획 검토
 - : 자료조사부와 대외사업부의 사업계획을 요약하여 다음 주에 보고하기로 하다.
 - 자료조사부: 하급심 판례 수집방안 등 / 도재형 부장
 - 대외사업부: 민주노총과의 연결채널, 일본 노동

변호인단과의 연결 채널 / 정태상 부장

⑦ 노동부의 민주노총 설립신고서 반려에 따른 대책

- 현재 계류중인 소송의 종료 문제
- 새로운 처분에 대한 소송제기 등을 민주노총과 협의하기로 하다. / 류호식 간사

(4) 회의: 5. 20.(수) 12시 서라벌

①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 진행상황 점검

- 원고완료 부분만 현재 감수중: 정재성, 고태관 위원
- 이원재 위원이 집필중인 원고는 5월 25일까지 반드시 완성하기로 하다.

② 신입위원 가입 추진 결과 점검

- 나라종합법률사무소의 김수섭 회원과 법무법인 시민의 전영식 회원의 가입을 확인함.
- 신입위원들의 특별회비는 6월부터 적용하기로 하다.

③ 각 사업부별 사업계획 검토

- 제출된 대외협력부의 사업계획을 검토
- 홈페이지의 운영은 정보통신위에서 계획하고 있는 홈페이지 운영과 연계하는 것으로 추진
- 「일본 노동변호사단과의 연계활동 추진」을 추가하고, 김진국 위원과 최봉태 위원을 추진 담당자로 선정하다.

④ 노동부의 민주노총설립신고서 반려에 따른 대책 논의

- 민주노총이 신고서 반려에 연연하지 않고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가짐에 따라 새로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기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만 6. 19. 심리기일에 결심할 수 있도록 하고, 폐소할 경우 상고, 현재 제소 등의 방법들을 진행하기로 하다.

(5) 회의: 6. 3.(수) 12시 서라벌

① 대전 성모병원노동조합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을 김연수 위원이 발송하였다고 보고하다.

②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 상황 점검

- 신입회원 중 이정택, 성상희, 김수섭, 전영식, 하승수, 양철웅 회원의 노동위원회 가입을 최종적으로 확인함.

- 신입위원 오리엔테이션은 6. 27.(토) 전체모임 시에 같이 갖기로 하다.

④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활동 상황 및 총파업 참여노동자 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 구성 및 발족 상황보고 / 김도형 위원

- 부당노동행위 진상조사단 구성에 민변 노동위에서 김도형, 이경우, 정태상 위원이 참여하며, 한양대 의료원, 국민대학교, 세계일보 등을 방문, 조사하기로 하다.

- 총파업 참여 노동자 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 발족: 총 77명

- 첫 사업으로 5. 30.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의 경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준비중(대리인 이인호, 김도형) 변호사

⑤ 6월 전체모임 준비 논의

- 6. 27.(토) 15시에 열기로 정함.

- 주제선정 및 발제자를 다음 주 모임까지 확정하기로 하다. / 정태상 대협부장, 류호식 간사.

- 노동위원회 확대개편 1주년 기념과 신입위원 오리엔테이션을 겸하여 청계산 감나무집에서 뒷풀이를 갖기로 하다

(6) 회의: 6. 10.(수) 12시 서라벌

①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 상황 점검

- 현재 최종 감수 및 편집, 교정 중.

- 추천사는 김금수 선생이 다시 써주기로 함(I 권의 추천사 포함 원고료 1십만원을 지급하기로).

- 책값은 I 권과 거의 같은 분량이므로 1만 5천 원으로 하고, 발행부수는 2천부로 하되 옵션인쇄로 하기로 하다.

- 광고는 「매일노동뉴스」에만 하기로 하고,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기사처리하기로 하다. 단 「1997 노동판례비평」 발간 후 그간 발간된 책들을 묶어서 신문광고를 검토해 보기로 하다.

(7) 회의: 6. 17.(수) 12시 서라벌

①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 상황 점검

- 인쇄처를 서울인쇄노조에서 협조 요청한 '희망 인쇄'로 바꾸기로 결정함.

-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내용 조정: 제4장 '노동쟁의' 부분을 법조문에 대한 비판적 해설로 수정하기로 함 / 이원재 위원 담당

② 「1997 노동판례비평」 상황 점검

- 「노동판례 현황 분석」을 6월 전체모임에서 검토하기로 하다. / 담당 김도형 위원

③ 6월 전체모임 점검

- 일시 및 장소: 6. 27.(토) 오후3시 민변사무실

- 발제: ⑦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과제 / 이용범 (새정치국민회의 춘천을 지구당 위원장)

⑧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과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도재형 변호사(민변 노동위원)

⑨ 97년 대법원 노동판례 현황 분석 / 김도형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총무)

나. 언론위원회 / 위원장 박형상, 간사 김기중

다. 사회복지위원회 / 위원장 박주현, 간사 이찬진

라. 환경위원회 / 위원장 오종한

(1) 회의: 5. 6.(수) 20시 민변사무실

- 미국 환경법 요약자료 중 '쓰레기 처리문제' 및 '화학제품 규제문제(TSCA)' 부분 발제(김진국 위원) 및 토의

- 미국 환경법상 원고 적격 및 시민소송제도 등에 관한 논의

- 향후 공부계획에 대한 논의

마. 통일위원회 / 위원장 송두환, 간사 이상호

(1) 회의: 6. 11.(목) 19시 집현전 사무실

① 11차년도 사업계획안 구체 논의

- 위원 각자가 연구분야를 맡아 심도깊은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상호: 통일과정에서 이탈주민들의 지위와 이에 대한 대책

김인희: 경협 등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남북교류 협력

김진옥: 군축과 평화협정

유효석: 통신, 서신 등 교류

정연순: 이산가족의 문제

김동균: 독일통일과정에 대한 연구 등에 대해 분담하여 맡기로 하다.

- 이와 관련 외국자료 등의 수집을 위해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을 알아보아 특별회원의 자격으로 동참케 해보자는 안이 나와, 적격자를 알아보기로 하다.

- 앞으로 각자 연구의 성과를 중간보고식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모임을 진행하며 연구결과가 모아지는 것과 국내의 상황을 보아 적절한 시기에 심포지엄 또는 법안 청원 등의 형식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다.

② 회원 확대의 문제

- 신입회원 중 세종에서 근무하는 1~2명의 회원

을 확보하는 방안을 김인희 회원이 담당하기로 하다.

- 외부에서 통일문제에 진력하고 있는 학자, 대학원생 중 특별회원 형식으로 함께 참여하여 외부의 성과도 입수하고 모임의 활동 방향도 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 계속 논의하기로 하다.

③ 연대사업에 관하여

- 지금까지 일회성으로 진행된 연대사업분야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통일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시민단체 들에 대한 정보자료를 입수해 보기로 하였음.

④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북한의 기족법」을 회원들이 구입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정연순 회원이 발제하기로 하다.

⑤ 김인희 회원이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하고 회원들간에 토론하였음.

⑥ 현재 진행중인 소송경과 보고

- 유효석 회원이 최근 민주노총에서 낸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소송에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를 간략히 의논: 유효석 회원이 검토하여 보고하기로 함.

- 김인희 회원이 진행중인 북한 주민접촉신청불허처분취소소송에서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보고, 소송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의논, 선고기일이 잡혔다는 보고를 받음.

바. 경제정의위원회 / 위원장 김주영, 간사 차규근

사. 동북아시아특별위원회 / 위원장 임종인, 간사 이유정

(1) 회의: 98. 5. 14.(목) 18시 30분 민변사무실
- 강연: '미국 여성운동의 흐름' / 강은실 (이화

여대 여성학과 조교수)

- 일본국제법률가협회 주최 <일본과 미국의 신가 이드라인에 대한 토론회>에 임종인, 박성호, 최은순, 김석연 회원이 참석하기로 하고, 김석연 회원이 발표할 예정

(2) 회의: 6. 11.(목) 18시30분 민변사무실

- 강연: '최근 중국의 경제동향' / 한홍석 LG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조광희, 한택근 회원 탈퇴, 조상희 회원 가입.

아. 교육문화위원회

(1) 위원장 조상희 회원, 고문 이석태 회원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

4. 임시특별위원회

가. 정보통신위원회 / 위원장 김기중

나. 미국법위원회 / 위원장 임재연 회원

총 목 차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이달의 민변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김보은 사건 감정서 / 김광일
시기별 국가보안법 적용 통계 / 민변 편집부

■ 제2호(93년 12월)

사론
제도보다 양심이 더 문제다 / 한승현
특집 - 한국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한다
한국 법원의 위기상황과 법원개혁의 방향 / 정종섭
검찰, 알이 깨어지는 아픔 / 안상수
사법부의 과거 청산과 개혁 / 최병모
우리 사법이 걸어온 길과 앞날의 과제 / 이범렬
유현석 변호사의 법조희고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② / 유현석

특별기고

회상: 황인철과의 40년 / 김병익
세계인권대회 보고
세계인권대회와 한국 민간단체의 활동 / 천정배
아시아지역의 국가보안법 개관 / K. S. Venkateswaran

세계의 인권단체

아시아 와치(Asia Watch) / Sydney R. Jones
판례평석

국정교과서제도 헌법소원 사건 / 이석태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과 단체협약 변경 명령 / 이경우
논문

제6공화국의 노동정책 / 이선수

피고인석에서 바라본 재판
문의환 목사 방북사건 재판 법정유감 / 유원호
전대협 제5기 의장단사건 변론기 / 안상운

우리말 바로쓰기

우리말로 바로잡아본 헌법② / 이오덕

자료

인권에 관한 아·태지역 비정부단체 선언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이애나가 교과서 검정소송사건 의견서 / 지명판

■ 제3호(94년 6월)

시론

국제화와 인권 / 오재식

특집 - 인권축면에서 본 김영삼정부 1년

김영삼정권의 인권정책: 분석과 전망 / 곽노현

선택과 배제의 개혁,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 홍준형

'과거청산'의 법적 제문제 / 박원순

법조회고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③ / 유현석

피고인석에서 바라본 재판

문민정부에서의 양심수 경험 / 노태훈

활동소식

한일법률가교류회 참가보고서 / 김제완

세계의 인권단체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 / 번역 김은영

세계의 인권

동티모르 / 인권운동사랑방

논문

한국 장애인복지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제언 / 이성재

피구금자의 외부교통권 / 박승옥

정보공개법의 향방과 인권 / 강경근

오판의 발생구조와 극복방안 / 박성호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가보안법 판례 / 장호순

법률산책

영화 속의 법 / 조광희

140

■ 제4호(94년 12월)

시론

12.12 반란사건의 기소유예조치는 반역사적·반개혁적이다 / 고영구

논문

자치시대와 개정 지방자치법 / 안봉진

현행 환경관련 법제의 문제점 소고 / 류지태

변형근로시간제 / 이원재

최근 노동판례의 경향과 대책 / 김선수

북한문제가 남한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에 미친 영향 / 강정인

국내법상 대법관 임명절차와 외국의 사례 / 이석범

판례평석: 형법 제310조의 법리 / 문채규

법조회고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④ / 유현석

세계의 인권소식

버마의 인권과 민주화 / 이성훈

인권A규약(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과 인권운동 / 이대훈

세계의 인권단체

ACLU(미국시민권연맹) / 장호순

법과 문학

한국문학과 감옥 체험 / 정호옹

피고인석에서 본 재판

『즐거운 사라』재판, 그 털썩압의 끝없는 싸움 / 장석주

서평

가려진 삶 들추어내기 -『허현연구』 / 차병직

■ 제5호(95년 12월)

시론

5.18 특별법과 과거청산 / 박성민

특집 - 동경재판이 은폐한 전쟁범죄자들

동경재판을 모면한 사람들 / 박원순

인도(人道)에 반하는 범죄로서의 일본 종군위안부제도 / 김원

판례평석

이중기능적 양벌규정 / 손동건

법조회고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⑤ / 유현석

특별연구

국제법에 비추어본 제3차 개입금지 규정의 효력 / 조용환

<자료> 국제연합 제네바 인권센터 결정문

세계의 인권단체

국제법률가위원회(ICJ) / 이성훈

논단

과로사의 보상이론과 실무상의 쟁점 / 이경우

아시아의 인권보장체계, 그 현실과 전망 / 박원순

수혈 또는 혈액제제에 의한 에이즈 감염과 법적 책임 / 김삼화

피고인석에서 본 재판

'조문파동 - 구속에서 무죄석방까지' / 이창복

작단

'법과 문학'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 안경환, 정종섭, 신현

옥, 박성호, 차병직

권밀자료 / 민변 언론위원회

영화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방송법(안)에 대한 의견

이달의 민변

■ 제1호(96년 8월)

권두언

살아 움직이는 사회를 위하여 / 조준희

특집 - 12.12와 5.18 재판 평가와 과거청산의 과제

12.12와 5.18 재판에 대한 평가 / 차병직

재판을 통해서 본 5.18의 정치사회적 의미 / 김상곤

12.12와 5.18 재판 이후의 과거청산: 과제, 원칙, 전망 / 곽노현

외부에서 본 민변

로스엔젤레스에서 본 민변 / 이수형

판례소개

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는 선거무효결정권한의 한계 /

김우진

미국 통신품위법의 위헌판결문 요지와 분석 / 번역 고연금

회원기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인희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 김석연

환경소송상의 주요쟁점과 기획방안 / 오종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관련 활동보고

경과보고 / 김선수

노사관계 개혁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을 위한 의견조사서 / 사무국

신입회원 인사

박영립, 정주식, 허경미

기행 / 수필

운수 나쁜 날 / 이석태

하루감옥 체험기 / 이유정

미국 유학기 / 김선수

인권영화소개

<데드 맨 워킹>을 보고 떠오른 몇 가지 생각 / 조광희

활동보고 / 성명서

■ 제2호(96년 9월)

권두언

안기부법 개정 논의를 바라보며 / 홍성우

특집 - 연세대사태와 한총련을 돌아보며

통일, 그 내릴 수 없는 깃발 - 한총련 사태와 통일문제 / 박원순

한총련을 위한 변명 / 임종인

현 정세와 한총련의 과제 / 최규업

연세대 사태와 위기이데올로기 / 유일상

신입회원소개

신입회원의 글 / 김주영

추천사 / 유중원

위원회 소개 - 사회복지위원회

한국 사회복지의 주요쟁점 / 박주현

인권영화 소개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 이형근

회원기고

판사실 난입 만류기 / 임재연

백두산 여행기 / 유중원

시골사는 이야기 / 박승옥

'타타타'와 '지피지기' / 임영화

영미법 연구의 기초 / 김현종

외부에서 본 민변

인권운동에 동고동락하는 벗을 기대하며 / 박래군

국제인권

불처벌에 관한 쥬아네 보고서 / 김은영

인종차별철폐소위보고서 / 곽노현

판례소개

희망의 씨앗 (seeds of hope) 무죄판결 관련 / 김제완

이달의 판례 / 백승현

자료

한총련 통신망 폐쇄 준항고장과 이유서

민가협, 양심수 캠페인 집해방해의 건 소장

홍성담씨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장

사무국 소식

사무국보고

우토로마을 사건

성명서

■ 제3호(96년 10·11월)

권두언

정치의 요체 / 유현석

특집1 - 안기부법 개정과 대응에 대한 일고찰

국가안전기획부법에 대한 검토 / 안기부법개정대응임시특별위원회

안기부법 개정관련 반대 성명서 / 변우성

특집 2 - 정보공개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정보공개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 송두환

정보공개법안의 평가와 대안 모색 / 홍준형

위원회 기획기사 - 언론위원회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박주현

언론위원회 활동소개 / 언론위원회

특집 3 - 노동법 개정과 OECD

노동법 개정문제 / 김선수

OECD 기업과 한국의 '노사관계' / 김세균

외부에서 본 민변

외부에서 본 민변 / 김당

회원기고란

법정 밖의 변호사 / 김칠준

대회협력

신양중 보고 - 훈육인가 강제추행인가? / 최재천

인권영화소개

코르셋 / 정연순

판례평석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을 보며 / 정재성

구 영화법 제12조(사전심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 김기중

국민연금관리법 기각 결정에 대한 평석 / 이찬진

이달의 판례 / 백승현

노동판례모니터링

유니온샵 제도에 관한 판례 비판 / 정태상

국제인권

고문방지협약정부반박보고서 한글본 / 차지훈

자료

검찰증립화에 관한 국회 법사위에서의 참고인 문답 / 최영도

선거비용 공개 실사 청구서 / 언론위원회

5. 18 피해자 진술권 거부처분에 대한 재항고장

건설(일용)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법

(안) / 김진국

장애인 복지의 체계와 장애인복지법체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

향과 내용 / 이백수

사무국 소식

사업 및 업무보고

민변 9차년도 중간평가 발제문 / 사무국

신입회원이 바라본 민변 / 김석연

신착논문자료모음

성명서

구영화법 위헌결정에 즈음한 민변의 견해

5.18 관련 성명서

정정보도 신청 보도자료

■ 제4호(96년 12월)

권두언

그 나라의 이런 변호사 / 한승원

특집 1 - 표현의 자유와 법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관련

법 / 장호순

표현의 자유와 매체물에 대한 규제 : '청소년 보호법안' 검토 / 이형근

표현의 자유와 인권영화제

①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 '제1회 인권영화제' / 류은숙

② 대형문화로서의 인권영화제 / 조광희 · 40

③ 감상문 공모작 2편 / 이형근 · 44

특집2 -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교류회

제1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교류회 경과보고 / 사무국

한일법률가교류회 참가기

① 감상(感想) / 아주사와 가주유기

② 제1회 한일법률가교류회의 성공을 축하하며 / 후지모토 다다시

③ 제1회 한일법률가교류회를 참가하며 / 다나카 시케이토

④ 제1회 한일법률가교류회를 참가하며 / 가와하라 이쿠로

재일교포간담회

재일한국·조선인의 법적 지위 / 배훈

재일한국인의 국내법상 지위 / 유옥

재일교포간담회 참가기

① 한국족 참가기 / 박성호

② 일본족 참가기 / 백승호, 윤영화

회원의 변론경험담

심리불속행이라는 비상구 / 이재명

위원회 기획기사

경제정의위원회 소개

서평

오래된 미래 라디크로부터 배운다 / 조홍식

한상범, 바보들이공화국 / 정주식

외부에서 본 민변

시민과 변호사 / 김기식

인권영화소개

세 친구 / 이유정

신입회원 소개 및 추천

① 민변에 들어서며 / 윤학

늦은 만남 / 백승현

②가입인사를 드립니다 / 정웅태

꾸준한 연찬, 성실한 참여의 본보기 / 박연철

③ A Rolling Stone Came To A Halt. / 조상희

그윽한 향기가 배어있는 남자 / 윤기원, 유선호

사무국 보고

성명서

①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침해에 대하여

② '진관스님'에 대한 불법구금 및 재구속 사태에 대하여

자료

① 정보공개입법청원 / 언론위원회

②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입법청원 / 언론위원회

③ 제17차 유엔 고문금지위원회 참가보고 / 차지훈

④ 獨島 領有權 문제 / 정인섭

⑤ 안기부법개정의견서 / 안기부법개정대응임시특별위원회

⑥ 民主化와 軟免 / 이국운

⑦ 반분기회제보고 / 사무국

⑧ 감사보고 / 사무국

⑨ 시화호 무단방류금지 거치문 신청서 / 윤종현

■ 제5호(97년 1·2월)

신년사

최영도

권두언

검찰총장의 현법소원 / 김창국

특집 - 북한 쌀보내기

통일위원회 제안문 / 통일위원회 준비모임

민변의 북한 쌀보내기에 대한 보도자료 / 이형근

행정심판청구서

진술서 및 수사에 대한 입장

위원회 소개

노동위원회

회원의 변론경험담

어쩌다 의료소송을 하게 되어 / 최재천

해외회원 소개

샌프란시스코의 밤은 깊어만 가는데 / 박찬운

인권영화소개

<THE NET>의 경고 / 김기중

노동판례모니터링

추천인 제도 / 김도령

신입회원 소개 및 추천

① 고태관 변호사 민변 가입 추천의 글 / 김병주

② 민변에 가입하면서 / 장운영

신참변호사가 신참변호사의 추천사를? / 김인희

③ 민변에 들어서며 / 오승진

사무국 보고

자료

① 소위 문민정부 하에서의 국가보안법 남용사례 / 한택근

② 국가보안법,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 / 서준식

③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 민변

④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보고

⑤ 선거비용 공개실사 정보공개 청구서 / 민변 언론위원회·공선협

⑥ 통합방송법 제정 제안서 / 민변 언론위원회

⑦ 영화진흥법, 공연법 개정의견서 / 민변 언론위원회

⑧ 청소년보호법안에 대한 의견서 / 민변 언론위원회

⑨ 아시아태평양 NGO인권회의 참가기 / 손광운

⑩ CUG 폐지 제안서 / 민변 정보통신위원회

⑪ 한총련 관련 민사소송 소장 요약 / 백승현

⑫ 노동변호인단 발족회견문

⑬ 날치기판련 정보공개청구

⑭ 권영길위원장 업무방해 영장청구판련 위원회 청신청

⑮ 민주노총 지부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성명서

① 정부의 노동법개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② 날치기통과에 대한 항의농성을 마치며

③ 날치기통과에 대한 변호사 성명

④ 권영길위원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민변의 견해

⑤ 날치기 항의 팜플렛 내용 전문 게재

■ 제6호(97년 3월)

권두언

각자에게 그의 것을! / 송두환

시론

龍의 눈물 / 강금실

특집 - 한보사태

한보사태의 본질과 대응방안 / 최승수

한보사건: 한국적 부정부패의 전형 / 이은영

한보사건은 부패방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 강경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공개서한

한보 관련 정보공개청구

위원회 소개

국제연대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현황 소개

회원의 변론경험담

변명의무를 이행하며 / 신현호

나의 유학기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 정미화

민변위원회

언제나 진리없이 T인 인생이라는 명제 / 변우성

피고인석에서 본 재판
간첩 아닌 간첩으로 연행되어 / 박충렬
노동판례모니터링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 김도형
판례평석
시위참가학생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례에 대하여 / 조광희
사무국 보고
자료1 - 안기부법 국제실포지엄 발표문
①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통제의 현황과 과제 / 박연철
② 안기부의 권력 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 / 관노현
③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쿠차
④ 독일정보기관 '헌법보호청'의 폐해와 문제점 / 롤프 피스너
⑤ '국가 속의 국가' 구동독의 슈타지 체제: 해체와 전망 / 롤프 피스너
⑥ FBI의 부당한 정치사찰 및 CIA의 부당한 해외개입 중지를 위한 투쟁 / 키트 케이지
⑦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 / 그레고리 노짐
⑧ 5.18 관련 정보공개 판결문

자료2

- ① 좌담: 북한동포 돕기,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
 - ② 과거청산사업을 국민운동으로 / 박래군
 - ③ 6월 민주항쟁 10주년 사업의 의의와 목표 / 황인성
 - ④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여기에 서 있다 / 윤정옥
 - ⑤ 교사공무원 단결권,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 / 유상덕
 - ⑥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⑦ 국가보안법 무죄판결문
 - ⑧ 전자주민카드 관련 정보공개청구
 - ⑨ 날치기 판결에 대한 처분(회신) 촉구
- 설명서**
김영삼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담화에 대한 논평

■ 제7호(97년 4월)

권투언
봄이, / 박성민

시론
龍의 눈물 / 강금실

특집 - 특별검사제 · 부폐방지법

특별검사제의 필요성과 운영방향 / 김주원

Morrison v. Olsen, 487 U. S. 654, 108 S. Ct. 2597(1988)

판결 요약문 / 번역 김주원

한보사태와 부폐방지법 / 이태호
월례회 발제문
영장 실질심사제 분석과 평가 / 김칠준
위원회 소개
기획위원회 활동 소개
의정 1년 평가
그래도 회망이 과반수 / 천정배
지방회원 활동 소개
경기 북부지역 활동 보고 / 손광운
나의 유학기
한일 간의 협안을 실감한 유학생활 / 최봉태
인권영화 소개
위험한 아이들 / 임종인
서평
독일 통일의 법적 조명 / 김진욱
피고인석에서 본 재판
믿음으로 이룬 값진 승리! / 이광철
재판 방청기
서울법대 새내기 시국사건 재판 방청기 / 이경원의
노동판례 모니터링
외국인 기장에게는 뇌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김인희
자료
① 국가안전기획부법과 노동관계법 등 날치기 통과의 위헌 여부에 관한 의견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② 북한 식량사정과 민족화해 견지에서의 식량 지원 / 법률
③ 대만 혁폐기를 반입계획의 원인과 대북 식량지원의 필요성 / 장원
④ 민간의 북한주민 돕기 운동에 대한 법적인 고찰 / 김인희
⑤ 한반도 평화회담과 대북 식량지원 / 한충목
⑥ 대북 식량지원 관련 정부당국에 보내는 공개서한 / 이국운
⑦ 시민이 주인인 프랑스 시민방송 / 최민희
⑧ 5.18 관련 정보공개 판결문
사무국 보고
설명서
방회선 판사 연임 탈락에 대한 우리의 견해

■ 제8호(97년 5월)

권투언
제주, 바닷가에서 / 최병모

시론
변화하지 않고 있는 시국사건 재판진행 / 김선수

위원회 소개

출판홍보위원회 활동 소개

지방회원 활동 소개
전주에서의 변호사 1년을 돌아보며 / 안호영
나의 유학기
유학기가 아닌 미국 견문기 / 이경우
인권영화 소개
법정영화의 서사구조 / 조광희
외부에서 본 민변
민변은 우리 운동의 든든한 뼈! / 고상만
피고인석에서 본 재판
지겁습니다. 짜증납니다. / 박영생
신입회원 인사 및 추천
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소명 / 이기영
②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서 / 송영길
③ 그의 발전이 민변의 발전과 함께 하길 / 윤기원
④ 새내기 변호사의 바램 / 안병용
⑤ 신입회원 추천인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하여 / 김기중
⑥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일 / 도재형
노동판례 모니터링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 / 정태상
자료
① 간담회: 한총련 사건 변론 평가
② 사형제도의 역사 및 세계적 현황 / 김일수
③ 사형, 검증되지 않은 전통 / 오완호
④ 경제적 인권을 추구하는 인권단체 FIAN / 장소영
⑤ ICCPR 제40조의 보고서 제출의무 / 한정화
⑥ 국회의장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 소송
⑦ 공보처장관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⑧ 안기부장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 소송
⑨ 선관위원장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⑩ 북한주민접촉신청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
사무국 보고
설명서
① 정부의 민간 복 쌀지원 허용방침에 대한 민변의 입장
② 5.18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을 절대 반대한다
③ 검찰의 철저한 한보비리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④ 전, 노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진정한 과거청산의 시작이어야 한다

■ 제9호(97년 6월)

권투언

민주주의 토대 성취의 희망을 갖자 / 이돈명

시론

무엇을 할 것인가 / 김형태
특집1 - 청문회제도
외국의 청문회제도 검토: 한미간 청문회제도의 비교 고찰 / 박종흡
청문회제도 개선방향 / 손봉숙
특집2 - 특별검사제
특별검사의 필요성, 입법례, 입법방안 / 김주원
특별검사의 직무등에 관한 법률(안) / 김주원
미국특별검사법 / 번역 김주원
특집3 - 전자주민카드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의 개요 / 김기중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 이기우
전자주민카드의 편익론 비판 / 이승종
미국에 있어서 個人情報處理와 標準統識別票 / 변재우
전자주민카드 도입과 관련한 개인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홍운
위원회 소개
사법위원회의 활동과 미래
인권영화 소개
영화를 좀 더 재미있게 보는 법 - <산부인과> / 정연순
유엔 인권위원회 참가기
국제인권봉사회 GTC 훈련프로그램 1997 / 지은경
외부에서 본 민변
한 막내기자의 눈에 비친 민변 / 신석호
피고인석에서 본 재판
언제쯤 회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 윤석진
신입회원 인사
가입에 즐음하여 / 차홍권
민변의 한 구성원이 되면서 / 송창현
노동판례 모니터링
유니언숍 협정에 기한 해고 / 고태관
5.18 학술심포지움 발제문
5.18, 왜, 어떻게 일어났으며 무엇을 남겼는가? / 박광주
12.12, 5.18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의 역사적 의의 / 박연철
기획소송 판결문
박홍 손해배상소송 판결문
홍성남 손해배상소송 판결문
사무국 보고 · 166
설명서
대선자금은 전면 공개되어야 하며 검찰은 대선자금에 대하여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대선자금의 전면공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제10호(97년 7월)

권두언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 박연철

시론
벼려진 사람들 · 탈북자 문제를 생각하며 / 이찬진

특집 - 전자주민카드Ⅱ
정보지배사회에서 전자주민카드의 의미와 그 위험성 / 김기중
호주의 ID카드 반대운동 / 임영화
정부는 근거법률 없이 시행하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범국민적 논의를 시작하라 / 전자주민카드 공대위

특별기고
정부의 중앙은행 개혁안 무엇이 문제인가 / 유중원

위원회 소개
동북아특별위원회 소개

지방회원 활동 소개
민변 대전 · 충청지부를 결성하며 / 김연수

변론경험담
변호사와 공공성 / 강대성

인권영화 소개
초록물고기 / 이유정

피고인석에서 본 재판
한국에 과연 '사상 · 양심의 자유'는 있는가 / 김영오

5.18 학술심포지움 발제문
광주를 통한 한국 민주주의의 유혈통로와 미국의 위치 / 이삼성

폭력과 언어의 정치: 5.18 담론의 정치사회학 / 최정운

위원회 발제문 · 기타

법집행관리의 직무집행강령 / 조광희

법집행에서의 국제 인권 기준: 경찰 인권수첩 / 이화여대 '인권연대 소중한 사람들'

한국 경마 환급금 제도의 문제점 / 김도형

남녀 고용평등법의 개정방향과 내용 / 이백수

사무국 보고

설명서

이번 불행한 사태를 계기로 한총련의 혁신과 학생운동의 거듭 남을 촉구한다

검찰의 김현철씨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정보통신부의 컴퓨터 통신 아이디(ID) 사용 중지 및 게시물 삭제 조치에 대한 설명서

서울지방법원 형사담당 판사들의 한총련 강의 수강에 관한 논평

■ 제11호(97년 8월)

시론

네 혈관에 피가 된 이 강물을 / 조성래

특집1 - 국가기밀

'국가기밀'에 관한 최근 판례의 흐름과 평석 / 이석태

미국의 국가기밀 누설에 관한 법적 사례 / 장호순

독일형법상 국가기밀 보호 / 박달현

특집2 - 정치개혁입법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개정안 / 최승수

대선TV토론 주관기구 설치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안 / 박형상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의 개정 청원서 / 민주연대

특별검사의 직무등에 관한 법률 입법 청원서 / 민변 · 참여연대

위원회 소개

정보통신위원회 소개

나의 유학기

라드클리프 카메라를 회상하며 / 김제완

인권영화 소개

민주주의와 포르노 / 이형근

서평

「법은 무죄인가」 / 노정희

회원활동

테니스대회 참가기 / 조상희

피고인석에서 본 재판

치열한 대치가 끝난 후에 / 이종성

민변 연수기

서울법대생 97년 민변연수 평가서 / 강아람 외

5.18 관련자 사면 관련 공청회 발제문

사면권의 본질과 한계 / 김종서

5.18 관련자 사면에 대한 법적 고찰 / 박연철

국제연대위원회 발제문

청소년 사법제도 운영에 관한 국제연합 최소규칙(복경규칙)과

평석 / 차지훈

통일위원회 발제문

북한의 변호사제도 / 김진욱

기타

최근 시국공안 관련 대량구속사태와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보고서 / 민가협

사회복지사업법 입법(안) / 민변 등

국가안전기획부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사무국 보고

공개서한

국가안전기획부법의 제처리를 촉구합니다

국가안전기획부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등에 관하여 신속한 결

정을 촉구합니다

■ 제12호(97년 9월)

시론

사면과 고유권한 / 조준희

특집 - 경제민주화와 소액주주권의 활성화방안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경제민주화 / 김석연

상법과 증권거래법상 소액주주 보호규정 / 임재연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에 따른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와 이에 대한 구제방안 / 김주영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사건

재판참관기: 대동호 선장 김순기씨 사건 / 김진국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에 관한 변론 요지 / 백승현

통일위원회 백두산 여행기

말없는 산천이 말을 하네요 / 김인희

백두산 여행기 / 이상호, 오미남

좋은영화 소개

〈나쁜 영화〉는 나쁜 영화인가 / 조광희

서평

『法과 存在 / 法存在論 序說』 / 조친수

시민사회단체 인터뷰

북한동포돕기 민간운동의 현황과 전망 / 김석연

외부에서 본 민변 한 젊은 판사와 민변 / 이광범

97 상반기 노동판례 비평

97 상반기 대법원 노동판례 현황 분석(행정사건을 중심으로) / 김연수

97 상반기 대법원 노동판례 현황 분석(민사사건을 중심으로) / 김남준

노동판례 모니터링

정당한 면직처분의 판단기준 / 도재형

국제연대위원회 발제문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 / 김운영

사무국 보고

■ 제13호(97년 10월)

시론

'국민후보' 어떻게 볼 것인가 / 고영구

특집 -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표현의 자유 탄압과 신자유주의 / 강내희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 / 조광희

창작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 박재동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사건

일본의 어선 나포와 국제법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 조시현

회원의 변론경험담

변호사의 정체성과 소중한 느낌들 / 차홍권

나의 유학기

뮌헨에서의 생활을 돌아보며 / 김인만

시민사회단체 인터뷰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임영화

유학회원 통신

노틀담 LL.M 프로그램 소개 / 박찬운

〈한총련과 학생운동의 과제〉 토론회

한총련 탄압에 대한 학생운동의 전략 / 박수근

한총련 탄압에 대한 학생운동의 전략 / 김영규

〈한총련과 학생운동의 과제〉 토론 요약문

사회복지위원회 강연 발제문

빈민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 호

기획소송 소장 등

신고한 시위를 무력 저지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신고한 시위를 무력 저지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

한국는단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5.18 관련 수사기록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무국 보고

설명서

새 대법관 임명에 관한 우리의 견해

서성 대법관 내정자에 대한 견해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중 전 · 노씨 사면에 반대한다

■ 제14호(97년 11월)

시론

정권교체라는 과제는 여전히 유효한가 / 김선수

특집 - 탈북자문제

인권문제로서의 탈북자문제 / 임을출

북한이탈주민의 국적과 보호 / 이상호

독일통일과정에서의 서독의 동독탈출자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 정연순

회원의 변론경험담

사소한(?) 사건의 예측하지 못한 결과 / 이백수

외부에서 본 민변

'밖'에서 본 민변 / 이상영

시민사회단체 인터뷰

인권운동사랑방을 찾아 / 이유정

한일법률교류회 참기기

한국인 변호사와 제일 한국인 변호사의 교류회에 출석하여 / 이와기 유타카

양심수문제 긴급 토론회

양심수 이해를 위한 시론 / 박원순

노동위원회 발제문

1995년도 중앙노동위원회 심결례 분석 / 이인호

부산지역 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과제 / 김석준

기획소송 소장 등

한국논단 고소장

사무국 보고

성명서

- ① 인권영화제 탄압에 대한 민변의 견해
- ② KBS, MBC, SBS 3개 공중파방송은 대선에서의 매카시즘 여론조작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③ 한국논단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며
- ④ 한국논단 토론회 생중계에 대한 공개사과를 촉구한다

■ 제15호(97년 12월)

시론

'실명제 죽이기'의 진짜 속셈 / 김창국

특집 - 제15대 대선후보 정당정책 비교 평가

정치부문 - 내각제: 민주주의의 전진인가? 후퇴인가? / 손호철

경제정책 / 김상조

노동정책 / 노중기

사회복지정책 / 김종일

문화정책 / 박인배

인권정책 / 이덕우

회원의 변론경험담

대안의 혁폐기를 이전 가처분 신청기 / 임호

노동판례 모니터링

유니온숍 협정에 따른 해고에 있어서 조합 탈퇴가 무효인 경우 해고의 효력과 임금지급의무 / 정재성

시민사회단체 인터뷰

지방화시대의 선두주자: 관악지역운동단체 / 김석연

신입회원 인사

민변, 연구의 대상(?) / 김봉석

변호사의 하루 / 이종필

장애인종합법

장애인종합법(통합법) 제정 이유 / 권도용

장애인종합법(안)

사회복지위원회 발제문

사회복지 위원회 / 김진수

기획소송 소장 등

월간조선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심판청구

월간조선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판결문

불법 불신검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무국 보고

성명서

- ① 최근의 양심수 논란에 대하여
- ②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식씨의 체포에 관한 논평
- ③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후퇴에 반대한다
- ④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의견
- ⑤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의안 661)에 대한 민변 의견
- ⑥ 금융개혁관련법안의 줄속 처리에 반대한다
- ⑦ 이장희 교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제16호(98년 1월)**

시론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 최영도

특집 - 새 정부 출범 / 예측과 대응

새 정부의 인권 및 법제 개혁 과제 / 천정배

IMF 체제와 재벌 개혁 / 김석연

이제 그만 끌었으면 좋으련만... / 김기중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박래근

공개토론회

법조비리 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 45

감옥에서 온 편지

사랑하는 보슬아, 사랑하는 혜수야 / 서준식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외환위기의 원인과 IMF 구제금융의 영향 / 장상환

노동위원회 발제문

개정 노동법과 산별노조 / 최원식

병원노련 산별노조 건설 현황 / 강영삼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 / 토론

기획소송 소장 등

변호인 접견 거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 최병모

무죄등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즉시석방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외 / 최병모

사무국 보고

성명서

전두환, 노태우씨 사면에 즈음한 우리의 견해

■ 제17호(98년 2월)

시론

시장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 김웅조 · 4

특집1 - 인권 관련 개혁 제안서

대통령 당선자께 제안서를 전달하며

세정부의 인권정책 기조에 대한 제안서 / 조용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 한택근

인권 관련기구의 인적 청산 개혁에 관한 제안서 / 유선영

국가안전기획부 개혁에 대한 제안서 / 장주영

검찰제도 개혁에 대한 제안서 / 김한수

양심수 문제에 관한 제안서 / 박성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확립을 위한 제안서 / 김기중

특집2 -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 구속사건

인권운동가 서준식 구속사건 경과 / 박래근

모두진술 / 서준식

보석허가청구서 / 조광희

헌법소원심판청구 / 이석태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 김진국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 김기중

노동판례모니터링

대기기사에 대한 기본급 지급의무 / 이재명

좋은 영화 소개

페미니즘에 대한 한 생각 -〈에일리언4〉를 보고 / 이형근

신입회원 인사

지각 입회의 罷 / 김종훈

월례회 발제문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근본원인 및 대책방향 / 문국현

기획소송 소장 등

한총련 관련 국가보안법사건 무죄 판결문 / 담당 변호인 유중원

안기부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 / 정연순

사무국 보고

성명서

경제 위기 극복과 사회적 합의과정과 IMF추가 · 보완협상과 관련된 시민 · 사회 · 종교단체의 입장

■ 제18호(98년 3월)

시론

법과 정치 / 정종섭

특집 - 선출되지 않은 두 절대권력 / 언론 그리고 재벌의 개혁방향

한국언론개혁의 과제와 방향 / 이효성

신문 개혁의 과제와 실천방안 / 박용규

한국 재벌체제의 止揚에 관한 일고찰 / 김기원

정치개혁입법

부패 추방의 헌법적 고양 / 김주원

시민사회 발전방향 토론회

한국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과제 / 박원순

특별기고

韓國 憲政史를 통해 본 이승만 國會 흥상 건립의 不當性과 歷史意識의 不在 / 이철호

시민사회단체 인터뷰

제주4.3 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 임영화

한일법률기교류회

일한법률기교류회 결성식 참가 보고서 / 이유정

노동위원회 발제문

IMF 관리체제 하의 재벌개혁문제 / 김상조

미국의 고용조정 현황 / 차지훈

노동위원회 의견서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기획소송 소장 등

영등포 구치소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고발장 / 백승현

안기부의 「시사저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의 주요 내용

안기부의 「시사저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답변서 / 최재천

안기부의 「시사저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문

사무국 보고

성명서 등

판사 수뢰사실 보도에 접하여

법조비리 진상규명과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고

노사정 합의를 무시한 노동관계법 국회 통과를 비판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정기구독회원 모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연구·조사, 변론, 여론 형성 및 연대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직된 전문 법률가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이루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소속회원들의 성과들을 매월『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이라는 월간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외부 인권단체 자료와 법학자, 인권운동가의 글도 함께 게재함으로써, 법률·인권지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변 회원들에게만 배포되던『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통권 제10호(97년 7월호)부터 비회원에게도 판매합니다.

책값 권당 3,000원 / 1년 정기 구독료 30,000원

* 93년부터 95년까지 반년간으로 발간된 (구)『민주사회를 위한 변론』도 판매합니다.

(1·2호 - 6,500원 / 3·4·5호 - 7,000원)

12.12, 5.18 판결 평석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5.18 특별위원회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민족정기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압력으로, 이른바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1997. 4. 17. 대법원에서는 전두환·노태우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된다는 역사적 본보기가 된 이 판결에 깊이 관여하여온 민변에서는 판결에 대하여 조속히 검토하여 문헌으로 남겨둘 것을 예정하였고, 이제『12.12, 5.18 판결 평석집』의 발간을 통하여 이 사건 판결의 의미를 더욱 확실히 하여두고자 합니다.

차례: 성공한 쿠데타의 차별 / 12.12 군사반란행위상의 쟁점 / 내란죄의 종료시기 - 공소시효의 기산점 / 내란목적살인죄의 적용요건 / 전·노 비자금과 포괄적 뇌물죄 / 5.18 판결, 그 미완의 과제

신국판 198쪽 / 값 4,000원

1996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996 노동판례비평』은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회원들과 젊은 노동법 교수, 노동법 전공 판사들의 1996년 대법원 노동판결 분석서입니다.

책의 제1부에서는 1996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노동판결 중 판례공보에 게재된 134건의 판결성향을 분석하고 분석대상이 된 판결의 목록을 게재하였으며, 제2부에서는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시민법의 형식적 평등원리를 실질적 평등원리에 따라 수정하여 불완전한 시민사회를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신국판 392쪽 / 값 8,000원

변호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문제 / 천
낙봉
노동판례 모니터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이유로 한 효력정지기처분 / 도재형
법과 문학의 비망록
리틀 이집트의 코메리칸들 / 안경환
피고인석에서 본 재판
국가보안법 재판 달라져야 한다 / 송석현
소액주주운동
삼성전자 주주총회 참관기 / 정문영
함께 하는 책읽기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기:『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차병직
신입회원 인사
행복한 사람 / 정연기
제2차 아센회의
아시아 경제위기의 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회의 참가기 /
김은영
아센의 쟁점과 민간단체의 역할 / 한국 아센 민간단체포럼
아시아/유럽 민중의 전망과 제안
제2차 아센회의 관련 주요 활동
제2차 아센회의 관련 자료
사회복지위원회 발제문
생활보호법 입법청원안 / 이찬진
사무국 보고
성명서
양심수에 대한 미흡한 사면조치를 비판한다
검찰의 금품 수수 판사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비판한다

■ 제20호(98년 5월)

창립 10주년 기념사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10년 / 최영도
특집 - 민변 창립 10주년에 바란다
변함없는 명제 인권 창달 / 고영구
조정역으로서의 민변 / 김종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진영을 갖출 때 / 박주현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 박찬운
고향, 그리고 민변 / 안봉진
용기 있고 냉철하고 따뜻한 민변을 만들자 / 이상중
무엇에 대한 동지적 단체가 되어야 할까 / 차지훈
'쓴 소리' 들 / 강희철
발로 뛰는 인권 파수꾼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 김용현
저 혼난했던 민주화운동의 동료 / 김현배

민변의 노동전문 변호사들이 알기 쉽게 풀어 쓴 본격적인 노동법 해설서 시리즈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I

• 근로기준법 •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II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이 책들은 97년 3월 13일 새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개정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포함하여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조문별로 알기 쉽게 풀어 쓴 본격적인 노동법 해설서로서, 특히 노동현장에서 자주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풍부한 판례와 사례들을 열거하여 해설하고 있다. IMF 금융지원체제 아래 갖가지 불법·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오늘의 노동현실에서 이 책들이 이러한 노동현실의 혼란스러움을 겪어내고 노동자들의 건강한 권리를 지켜내는 데 홀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각권 신국판 573쪽 / 값 15,000원

*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교육용으로 10권 이상 구입할 때에는 25% 할인된 가격에 드립니다.

근간 예정 도서

■ 1997 노동판례비평

■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공모 수상작품집

* 민변 발행 도서의 정기구독 및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구좌로 입금하시고 민변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상업 431-04-125308 최영도 민변

구입문의: 민변 사무국(02-522-7284)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8년 6·7월 합본호(통권 제21호)

발행일 98년 7월 15일

발행인 최영도

편집인 출판홍보위원회

이백수 차병직 박성호 이찬진 정연순

양태훈 정종섭 염규홍 최미희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소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 522-7284 팩스 522-7285

천리안 m321

하이텔 minbyun7

값 3,000 원